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7. 10

2017. 10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17. 10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심층평가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식 인천대학교 조교수

2017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 요 약

##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 파악결과와 함께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감면규모 파악) 2007년 이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가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호별 감면규모를 파악
  - (타당성) 법리적 검토 및 우리 경제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효과성) 다양한 정책대상자들의 정량적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
  - (제도개선) 현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정책대상자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부 호의 개선방향을 제시

## 2. 분석내용 및 결과

- (각 호별 감면규모) 2012년 이후 감면규모의 94.62%가 제14호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포괄적 주식의 교환·이전 관련에 의해 유발됐으며, 일반대기업·수입금액 1조원 이상·금융보험업 중심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감면규모와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했으나 2014년 이후 최근의 감면규모 차이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당시 증권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외부 대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117①6	-	-	0.001	0.058	41	41	0.07
§117①7	168	0.187	-	0.001	1	169	0.31
§117①7의3	-	-	-	-	35	35	0.06
§117①8	918	-	-	-	1	919	1.67
§117①9	56	-	-	10	12	78	0.14
§117①13	-	-	-	56	150	206	0.37
§117①14	155	352	15,626	32,363	3,609	52,105	94.62
§117①16	-	74	-	3	71	148	0.27
§117①19, 19의2, 19위3	-	0.2	1	1,345	2	1,348	2.45
§117①22	0.003	-	-	-	-	0	0.00
§117①23	-	-	-	-	20	20	0.04
§117①24	-	-	-	-	0.4	0.4	0.00
계	1,297	426	15,627	33,777	3,942	55,069	10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조세지출예산서와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세청 신고서상 감면규모(A)	13	4	156	338	39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규모(B)	1,641	66	176	348	45
차이(A-B)	-1,628	-62	-20	-10	-6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정책타당성) 기업의 유지 및 계속성을 위해서 현재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구조조정을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과세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구조조정 후 기업 내에 존속하는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구조조정 지원세제와 함께 증권거래세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 다양한 정책대상자 중 입법시기와 다른 여건의 변화로 인해 폐지를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음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에 대한 유지 필요성은 현저히 낮아지거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 제16호와 제22호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
      - 기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해체가 관찰되며 이는 동 지원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주체들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에 기인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가능성은 없음
    - 그러나 「중간지주회사법」의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동 조항 제16호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는 현행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프랑스가 2012년 증권거래세를 제도입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효과성)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해 동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한 결과, 동 제도의 효과성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동 조항 일부 호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동 제도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회계사들의 응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88%가 필요함(80%) 또는 매우 필요함(8%)으로 응답
  - 동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각 호별 지원제도가 해당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으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원(44%),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38%),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지원(14%),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4%)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
  - 심층면접 결과,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연구진의 판단은 유보적임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 수협, 산림조합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여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개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됨
-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일반 영리법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들을 형식적으로 재분류하고 조항을 달리하는 것의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므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대안으로 판단됨

###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전반적으로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일부 세부 호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항 중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일반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를 비롯하여 여타 항목들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법과정의 어려움과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를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 동 조항의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를 매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부속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각 호별 수혜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축되어야 향후 심층평가에서 각 호별 효과성 분석을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호별 정책대상자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조세지출 규모를 제117조 제1항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유념하여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속서류에 대한 국세청의 직접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전산화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

# 목 차

I. 서론	11
II.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19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21
가. 제도 개요 및 연혁	21
나.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규모	33
2. 주요국과의 비교	39
가. 우리나라 M&A 추이 및 국제비교	39
나.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관련 입법 동향	41
3. 시사점	58
III. 정책타당성 평가	61
1. 법리적 검토	63
가. 기업구조조정 운용을 위한 조세법 체계	65
나.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66
다. 조세 감면 없는 기업구조조정	67
2. 정책목적의 유효성	68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68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75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78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81
IV. 효과성 평가	85
1.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87
가. 설문개요	87

나. 설문 결과 .....	89
2. 심층면접을 통한 평가 .....	99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	99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	101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	104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	104
3. 시사점 .....	106
<b>V. 제도 개선방안 .....</b>	<b>109</b>
1. 종합평가 .....	111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	113
<b>참고문헌 .....</b>	<b>115</b>

## 표 차 례

<표 I-1>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1999~2008 .....	15
<표 I-2>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2009~2017 .....	15
<표 II-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도입시기 및 일몰기한 .....	28
<표 II-2> 「조특법」 제117조 항목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4
<표 II-3> 조세지출예산서와 비교 .....	35
<표 II-4> 기업유형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5
<표 II-5> 수입금액 규모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5
<표 II-6> 업종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5
<표 II-7> 기업유형별·연도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6
<표 II-8> 수입금액 규모별·연도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7
<표 II-9> 업종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	38
<표 II-10> 주요 국가의 M&A 추이 비교 .....	41
<표 II-11> 증권거래세 향방에 따른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	47
<표 III-1> M&A형 FDI 추이 .....	69
<표 III-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및 합병 추이 .....	71
<표 III-3> 한계기업의 추이 .....	73
<표 III-4>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방식에 따른 기금별 자금 지원 현황 .....	76
<표 III-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상별 부실채권인수 현황 .....	78
<표 III-6> 연도별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	81
<표 III-7> 연도별 금융지주회사 및 관계기업집단 누적 규모 현황 .....	82
<표 IV-1> 응답자에 대한 기초자료 .....	88
<표 IV-2> 구조조정 업무 수행 시기(중복 응답) .....	88
<표 IV-3> 구조조정 관련 경험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	89

<표 IV-4> 동 제도의 전반적 필요성 .....	90
<표 IV-5> 과거 IMF 위기 시 동 제도의 효과성 .....	91
<표 IV-6>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대비 동 제도의 효과성 .....	92
<표 IV-7> 각 목적별 상대적 중요도 .....	93
<표 IV-8>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	94
<표 IV-9>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일반법인 구조조정 지원의 경우 .....	94
<표 IV-10>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	95
<표 IV-11>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부실금융기관 지원의 경우 .....	95
<표 IV-12>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	96
<표 IV-13>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의 경우 .....	96
<표 IV-14> ‘각 호별 지원제도가 재무적 보조금 성격’이라는 응답률 .....	97
<표 IV-15> 각 호별 지원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 .....	98
<표 IV-16> 심층면접 대상자 .....	99

## 그림 차례

[그림 II-1] 2000년 이후 우리나라 M&A 추이 .....	40
[그림 III-1] 수출입 실적 추이 .....	72
[그림 III-2] 기업실적 추이 .....	73
[그림 III-3] 연도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추이 .....	80



# I. 서론





## I. 서론

- (정책대상자)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제20호 및 제22호~제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 양도의 경우
    -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주식의 교환 및 이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 선제적 사업재편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4호
  - 둘째,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 제23호
  - 넷째,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 및 교환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양도 관련: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2호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투자금액 중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운영 중인 자금을 대해서도 손실보전준비금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적립되어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는 지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음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되어 있던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

세 면제가 이번 심층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상기 이유로 이미 폐지됐으므로 심층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이외에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도 이미 삭제됐음

□ (수혜내용) 상기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기본세율은 0.5%이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0.15%와 0.3%임

□ (조세지출 추이) 동 제도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부실저축은행 사태 등 경제위기에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조세지출 규모는 50억원 미만으로 전망됨

- 동 제도의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한 해는 2012년으로 약 1,641억원임
  -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 발생으로 동 조항 제8호와 제9호에 의해 예금보호공사(정리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식 등 양도로 인해 2012년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가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에 보고됐으나 2007년부터는 제117조 제1항 전체 조세지출 규모만 제시되고 있음
- 또한 2013년과 이후 조세지출 규모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동 조항 제21호)에 의해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번 심층평가 대상이 아님
  - 이처럼 심층평가 대상의 조세지출 규모도 정확히 파악될 수 없는 상황은 이번 심층평가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표 I -1>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1999~2008

(단위: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17①6	4.8							0		
§117①7		0	0.1	0	0	0	0.04	0		
§117①8					22.4	38	0.26	0.69		
§117①9		0.2	0.3	1	3	2	0.11	0.54		
§117①10	137							361		
§117①11		5.2	2.3	0.8	0.7	3	4	1		
§117①12		0.2	0.5	1.4	1	0.1	1.5	1.7		
§117①15		0	0	0	0	0	0	0		
§117①16		-	0	0	0	0	0	0		
§117①17		0	0	0	0	0.1	0	0		
§117①18		0.04	0.4	12				23		
§117①									524	60
계	141.8	5.64	3.6	15.2	27.1	43.2	5.91	387.93	524	60

자료: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2000년~2009년)

<표 I -2> 동 조항의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2009~2017

(단위: 억원)

구분	'09	'10	'11	'12	'13 <sup>1)</sup>	'14	'15	'16(전망)	'17(전망)
§117①	211	435	31	1,641	66	176	348	45	47

주: 1)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의 수혜자 및 수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실적부터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1호(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항목의 실적이 포함된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2011~2017년)

- (현황 파악) 본 심층평가 대상인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을 갖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주식의 양도, 이전 및 교환 등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
  - 2007년부터 동 조항 전체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만 제시되어 있어서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무엇보다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를 국세청 자료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
    - 어떤 유형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보다 많이 활용되었는

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호별 활용정도를 상세히 파악하고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

-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사전적으로 예측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하고 사후적으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면제 내역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 목적)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조특법」 제117조 각 호별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기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 파악결과와 함께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특법」 제117조 각 호별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며, 유사한 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함

- 법리적 검토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과세 계기로 삼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각 정책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등을 비롯한 기업조직재편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 심층평가 대상 각 호별 행위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미치는 영향을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가 없을 경우 기업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비교대상 그룹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파악되지 않음

-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법」과 「조특법」 상의 과세특례제도들이 본 심층평가 대상 증권거래세 면제보다 더 큰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특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심층평가 대상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를 분석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축될 수 없으므로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 심층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하고자 함

- 이러한 정성적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또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또는 인지세를 면제해주는지 여부 및 감면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

- (연구 방향) 동 조항의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 및 주 활용 기업특성 검토 결과, 법리적 관점에서 정책타당성 검토 결과, 설문조사 및 전문가그룹 심층면접을 통한 동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유사한 해외사례분석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동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견지하고자 함
  - 동 조항의 각 호별 지원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 증권거래세 면제라는 형태의 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 II. 제도 운영 현황 및 국제비교

### 1. 현행 면제제도 운영 현황

#### 가. 제도 개요 및 연혁

- 증권거래세 면세규정은 1996년 12월 30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의2에서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 1999.12.28.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제117조에 증권거래세 면제 새롭게 규정함
  
- 1999.8.31. 법 개정시 부도중소기업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법 제1항 제15호 신설)
  -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 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함
  
- 1999.12.28. 법 개정시 기업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과 벤처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sup>1)</sup>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법 제1항 제2호의2·3 신설)
    -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에 대하여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11, p.7; p.17

- 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항 제2호의3 신설)
-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 2000.10.21. 법 개정시 예금보험공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확대함<sup>2)</sup>

-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항 제8호 가~다목 신설)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 면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임
-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5.12.31까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함(법 제1항 제16호 신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12.31.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기업개선약정체결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17호 신설)

□ 2001.5.24.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법 제1항 제19호의2 신설)

- 기금의 주식투자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함
-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sup>3)</sup>
- 연기금의 구조적 부실이 심한 현 상황에서 안정적 운용이 필요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연기금의 기초적 안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의 주식투자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유능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자산관리·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07, p.4

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1.04, pp.5~6

운용 능력이 빈약한 연기금의 현 실정에서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더욱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의한 증권시장의 부양효과에 대하여도 불확실하게 보는 시각이 많으며, 최근 증시대책이 발표된 날의 주가가 모두 하락하였다는 점을 볼 때 시장의 기대가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증권시장대책은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내 구조조정의 완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바탕 위에서, 미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증권시장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공급물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됨
- 세제지원 수단은 그 효과가 미미하고 간접적이므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증시상황에 의존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로서 세제유인에 따른 증시참여 동기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연기금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재정입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증권시장을 받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조세체계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면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2001.12.29. 법 개정시 합병·분할 등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확대 적용함

- 이는 국세청 예규로 운용되고 있던 합병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입법화하려는 것임

□ 2002.12.11. 법 개정에서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sup>4)</sup>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효율적인 부실자산의 정리촉진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 (법 제1항 제8호 개정)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2.11, p.25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농협조합이 기존의 예금보호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예금보호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함(법 제1항 제19호 신설)
- 2003.12.30. 법 개정시 부실수협이 보유주권을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시정 조치·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동 주권을 수협 등이 재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7호의2·19호의2 신설)
  - 이는 부실농협 및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협·수협의 건전한 발전과 농어민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부실수협 구조조정에 대하여도 부실농협·부실은행 등의 구조조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지원함<sup>5)</sup>
- 2004.12.31. 법 개정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확대함(법 제1항 제10호 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포함함<sup>6)</sup>
- 2006.12.30. 법 개정시 구조조정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를 폐지함(2006.12.30. 일몰 종료)
  - 증권거래세 면제가 일몰종료되는 구조조정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음
    - 기업구조조정조합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항 제2호의2 삭제)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항 제11호 삭제)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항 제12호 삭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항 제17호 삭제)

5)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3년, pp.287~288

6)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4년, p.294

- 기업구조조정기구 관련 면세 규정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나 도입 당시에 비해 구조조정 수요가 감소함<sup>7)</sup>
  - 또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한시법)이 '06.10월 실효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 설립된 CRF가 모두 존속기간 만료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원의 실효성이 감소
  
- 2008.12.26. 법 개정시 부실산림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 (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3·제19호의3 신설)
  - 부실하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산림조합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농협·수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009.5.21. 법 개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 및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함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부문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 신설)
    -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법 제117조 제1항 제20호 신설)
  
- 2010.1.1. 법 개정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종료하고 새로운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재정비함
  - (일몰연장) 창업·벤처투자과 금융지주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일몰연장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함
  - (신설) 기업 조직재편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조직재편 유형을 추가함 (법 제1항 제21호 신설)

7)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7년, p.590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조직재편 유형에 추가함(2010.7.1. 이후 교환·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일몰종료)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당초의 세제지원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12.31. 일몰종료됨(법 제1항 제3호~5호·제10호·제18호 삭제)<sup>8)</sup>
- 2011.12.31. 법 개정에서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법 제1항 제2호의2 신설)
-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2013.1.1. 법 개정으로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법 제1항 제22호 신설)
- 개정안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sup>9)</sup>
  - 국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신용사업부문(농협은행·농협보험 등)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을 현물출자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sup>10)</sup>
  - 또한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면서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8)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08, p.351

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12.31., pp.4~5

10) 이후 국회와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현물출자 1조원 및 이차보전 방식의 현금지원 4조원으로 수정되었음

-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관 간 출자금액·출자주식의 종류 등에 대한 협의가 2012년 10월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1년 세법개정시 설정하였던 적용기한인 2012년 3월 2일이 도과하였음
- 그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당시 세법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향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출자받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 2014.1.1. 법 개정에서는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추가함(법 제1항 제2호의4 신설)

□ 2014.12.23. 법 개정에서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sup>11)</sup>

- (신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의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2호의5 신설)
  - 이는 개별 주식선물·옵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신설)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23호 신설)
  - 이는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 (일몰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2015.12.15. 법 개정시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연장함

-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

11)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14, pp.250~252

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법 제1항 제2호의5 가목·나목, 법 제1항 제3호)

-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sup>12)</sup>

○ (일몰연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를 2015.12.31.에서 2018.12.31.까지 연장함

□ 2016.12.20. 법 개정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을 확대함<sup>13)</sup>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4호 신설)

- 창업·벤처투자 창구의 다변화 및 활성화를 지원함

○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법 제1항 제5호 신설)

○ 창업기획자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가함(법 제1항 제1호·제2호의4 개정)

- 창업기획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함

○ (일몰연장)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6.12.31.에서 2018.12.31.로 연장하여 재무구조 개선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표 II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도입시기 및 일몰기한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7.1.1.	2017.12.31.
제1항 제2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7.1.1.	2017.12.31.

12)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2015, p.268

13)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7, pp.311~314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2호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2.1.1.	2017.12.31.
제1항 제2호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0.1.1.	2017.12.31.
제1항 제2호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4.1.1.	2017.12.31.
제1항 제2호의5 가목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2016.3.14.	2018.12.31.
제1항 제2호의5 나목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2015.3.13.	2017.12.31.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2016.3.14.	2018.12.31.
제1항 제4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7.1.1.	2017.12.31.
제1항 제5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2017.1.1.	2018.12.31.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6호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99.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7호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98.9.16.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7호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2004.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7호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2009.1.1.	해당사항없음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8호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 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9.16.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9.16.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13호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09.5.2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99.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16호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000.10.21.	2018.12.31.
제1항 제19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3.1.1.	해당사항없음

구분	내용	적용시기	일몰기한
제1항 제19호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4.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19호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09.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10.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013.1.1.	해당사항없음
제1항 제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업채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5.1.1.	2018.12.31.
제1항 제24호	제121조의 30 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16.1.1.	2018.12.31.

주: 1) 단,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2010.7.1. 이후  
 자료: 삼일아이닷컴(www.samili.com)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나.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규모

- 2012년 이후 감면규모의 94.62%가 제14호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포괄적 주식의 교환·이전 관련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서 협조받은 「조특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감면받은 개별 납세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호별 연간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한 결과임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상의 자료를 2007~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요청했으나 2012년 이전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조정 지원 관련(동 조항 제19호, 제19의2호, 제19의3호)한 감면규모가 2012~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2.45% 수준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비중이 큰 감면조항은 제8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로서 2012~2016년 기간 전체 감면규모 중 1.67%를 차지함
  - 이외의 호에 따른 지원규모는 전체 감면액 대비 0.5% 미만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와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했으나 2014년 이후 최근의 감면규모 차이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규모는 1,641억원이지만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규모는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감면규모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했으나 당시 증권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외부 대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감면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일반대기업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주권발행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법인종류별 구분을 이용하여 분류함
  -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동 조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면액의 91.4%가 일반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유발됐음

- 같은 기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면액은 각각 2.6%와 6% 수준으로 나타남
-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다라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구조조정 의 개연성이 높고 증권거래세 감면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가 2012~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면제금액의 82%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는 전체의 7% 수준 이고, 수입금액 500억~1500억원 구간과 1,500억~1조원 구간의 증권거래세 감면 액 비중은 같은 기간 전체 감면규모의 6.2%와 4.9% 수준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2~20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증권거래세 면제규모의 78.1% 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했으며, 금융보험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각각 12.5%와 8.4%로 나타남
  - 이외에 1차산업(농림어업 및 광업)과 건설업 영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따 른 증권거래세 면제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표 II -2> 「조특법」 제117조 항목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117①6	-	-	0.001	0.058	41	41	0.07
§117①7	168	0.187	-	0.001	1	169	0.31
§117①7의3	-	-	-	-	35	35	0.06
§117①8	918	-	-	-	1	919	1.67
§117①9	56	-	-	10	12	78	0.14
§117①13	-	-	-	56	150	206	0.37
§117①14	155	352	15,626	32,363	3,609	52,105	94.62
§117①16	-	74	-	3	71	148	0.27
§117①19, 19의2, 19위3	-	0.2	1	1,345	2	1,348	2.45
§117①22	0.003	-	-	-	-	0	0.00
§117①23	-	-	-	-	20	20	0.04
§117①24	-	-	-	-	0.4	0.4	0.00
계	1,297	426	15,627	33,777	3,942	55,069	10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3> 조세지출예산서와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세청 신고서상 감면규모(A)	13	4	156	338	39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규모(B)	1,641	66	176	348	45
차이(A-B)	-1,628	-62	-20	-10	-6

자료: 국세청 신고자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4> 기업유형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중소기업	124	29	9	675	592	1,429	2.6
중견기업	-	0.0005	620	1,291	1,395	3,306	6.0
일반기업	1,174	397	14,997	31,812	1,957	50,337	91.4
계	1,298	426	15,626	33,778	3,943	55,071	10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5> 수입금액 규모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500억 이하	120	257	118	2,408	980	3,883	7.0
500억~1,500억 이하	15	29	14	1,466	1,913	3,439	6.2
1,500억~1조 이하	92	139	622	591	1,036	2,479	4.9
1조 초과	1,070	1	14,873	29,311	13	45,267	81.8
계	1,298	426	15,626	33,778	3,943	55,071	10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6> 업종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1차산업	3	0	0	5	0	8	0.0
제조업	246	77	638	1,536	2,123	4,620	8.4
건설업	10	173	4	337	4	526	1.0
금융보험	17	95	14,874	27,805	214	43,006	78.1
기타서비스	1,020	81	110	4,095	1,602	6,909	12.5
계	1,298	426	15,626	33,778	3,943	55,071	100.0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7> 기업유형별·연도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중소 기업	§117①6	-	-	0.001	0.058	41	41
	§117①7	66	0.2	-	0.001	-	66
	§117①7의3	-	-	-	-	35	35
	§117①8	0.5	-	-	-	-	0.5
	§117①9	2	-	-	-	5	7
	§117①13	-	-	-	55	27	82
	§117①14	55	29	8	568	483	1,142
	§117①16	-	-	-	3	-	3
	§117①19, 19의2, 19위3	-	0.2	1	49	0.3	50
	§117①22	0.003	-	-	-	-	0.003
	§117①23	-	-	-	-	-	-
	§117①24	-	-	-	-	0.4	0.4
	소계	124	29	9	675	592	1,429
중견 기업	§117①6	-	-	-	-	-	-
	§117①7	-	-	-	-	0.4	0.4
	§117①7의3	-	-	-	-	-	-
	§117①8	-	-	-	-	-	-
	§117①9	-	-	-	-	0.2	0.2
	§117①13	-	-	-	-	121	121
	§117①14	-	0.001	620	1,291	1,253	3,165
	§117①16	-	-	-	-	-	-
	§117①19, 19의2, 19위3	-	-	-	-	0.02	0.02
	§117①22	-	-	-	-	-	-
	§117①23	-	-	-	-	20	20
	§117①24	-	-	-	-	-	-
	소계	-	0.001	620	1,291	1,395	3,306
일반 기업	§117①6	-	-	-	-	-	-
	§117①7	102	0.01	-	-	1	103
	§117①7의3	-	-	-	-	-	-
	§117①8	918	-	-	-	1	919
	§117①9	54	-	-	10	7	71
	§117①13	-	-	-	1	2	3
	§117①14	100	323	14,997	30,504	1,873	47,797
	§117①16	-	74	-	-	71	145
	§117①19, 19의2, 19위3	-	0.03	-	1,297	2	1,298
	§117①22	-	-	-	-	-	-
	§117①23	-	-	-	-	-	-
	§117①24	-	-	-	-	-	-
	소계	1,174	397	14,997	31,812	1,957	50,337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8〉 수입금액 규모별·연도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조항	수입규모						
§117①6	~500억 이하	-	-	0.001	0.1	-	0.1
	~1,500억 이하	-	-	-	-	-	-
	~1조 이하	-	-	-	-	41	41
	1조 초과	-	-	-	-	-	-
§117①7	~500억 이하	65	0.2	-	0.001	-	66
	~1,500억 이하	7	-	-	-	1	8
	~1조 이하	54	0.01	-	-	0.2	54
	1조 초과	41	-	-	-	-	41
§117①7의 3	~500억 이하	-	-	-	-	35	35
	~1,500억 이하	-	-	-	-	-	-
	~1조 이하	-	-	-	-	-	-
	1조 초과	-	-	-	-	-	-
§117①8	~500억 이하	0.5	-	-	-	-	0.5
	~1,500억 이하	4	-	-	-	-	4
	~1조 이하	0.2	-	-	-	1	1
	1조 초과	914	-	-	-	-	914
§117①9	~500억 이하	1	-	-	-	5	6
	~1,500억 이하	1	-	-	-	0.2	1.5
	~1조 이하	26	-	-	10	-	36
	1조 초과	28	-	-	-	7	34
§117①13	~500억 이하	-	-	-	55	27	82
	~1,500억 이하	-	-	-	-	121	121
	~1조 이하	-	-	-	-	2	2
	1조 초과	-	-	-	1	-	1
§117①14	~500억 이하	53	257	117	2,301	911	3,639
	~1,500억 이하	3	29	14	1,466	1,700	3,213
	~1조 이하	12	65	622	188	992	1,878
	1조 초과	87	1	14,873	28,407	6	43,374
§117①16	~500억 이하	-	-	-	3	-	3
	~1,500억 이하	-	-	-	-	71	71
	~1조 이하	-	74	-	-	0.2	74
	1조 초과	-	-	-	-	-	-
§117①19, 19의2, 19위3	~500억 이하	-	0.2	1	49	2	51
	~1,500억 이하	-	-	-	0.2	-	0.2
	~1조 이하	-	0.03	-	393	-	393
	1조 초과	-	-	-	903	-	903
§117①22	~500억 이하	0.003	-	-	-	-	0.003
	~1,500억 이하	-	-	-	-	-	-
	~1조 이하	-	-	-	-	-	-
	1조 초과	-	-	-	-	-	-
§117①23	~500억 이하	-	-	-	-	-	-
	~1,500억 이하	-	-	-	-	20	20
	~1조 이하	-	-	-	-	-	-
	1조 초과	-	-	-	-	-	-
§117①24	~500억 이하	-	-	-	-	0.4	0.4
	~1,500억 이하	-	-	-	-	-	-
	~1조 이하	-	-	-	-	-	-
	1조 초과	-	-	-	-	-	-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표 II -9> 업종별 증권거래세 감면규모: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조항	업종						
§117①6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41	41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0.001	0.1	-	0.1
§117①7	1차산업	1	-	-	-	-	1
	제조업	91	0.2	-	-	0.4	91
	건설업	5	0.01	-	-	-	5
	금융보험	2	-	-	-	1	3
	기타서비스	68	-	-	0.001	-	68
§117①7의3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	-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	-	35	35
§117①8	1차산업	-	-	-	-	-	-
	제조업	1	-	-	-	1	2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4	-	-	-	-	4
	기타서비스	913	-	-	-	-	913
§117①9	1차산업	-	-	-	-	-	-
	제조업	38	-	-	-	5	43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10	-	10
	기타서비스	18	-	-	-	7	25
§117①13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43	43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	56	107	163
§117①14	1차산업	2	-	-	5	-	7
	제조업	116	77	638	206	2,012	3,050
	건설업	5	173	4	337	4	521
	금융보험	11	21	14,874	27,795	211	42,913
	기타서비스	21	81	109	4,020	1,382	5,61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조항	업종						
§117①16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	-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74	-	-	0	74
	기타서비스	-	-	-	3	71	74
§117①19, 19의2, 19위3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1,330	0.05	1,330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2	2
	기타서비스	-	0.2	1	16	0.3	17
§117①22	1차산업	-	-	-	-	-	-
	제조업	0.003	-	-	-	-	0.003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	-	-	-
§117①23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20	20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	-	-	-
§117①24	1차산업	-	-	-	-	-	-
	제조업	-	-	-	-	0.4	0.4
	건설업	-	-	-	-	-	-
	금융보험	-	-	-	-	-	-
	기타서비스	-	-	-	-	-	-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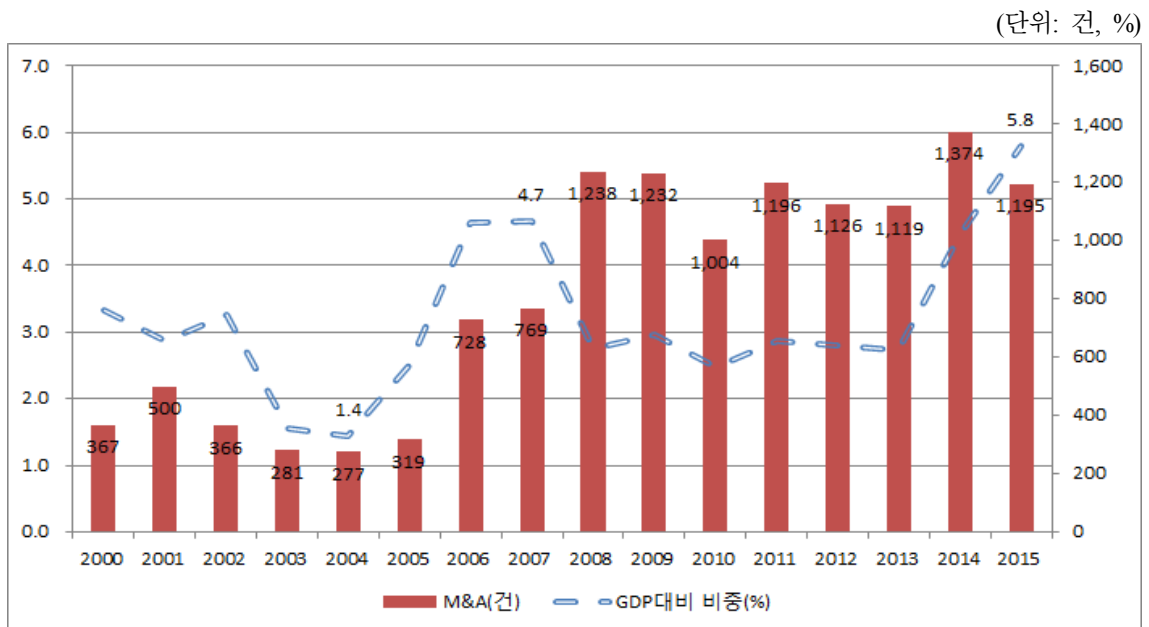
## 2. 주요국과의 비교

### 가. 우리나라 M&A 추이 및 국제비교

- 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형태인 인수합병(merge and acquisitions)의 추이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주요 국가들의 M&A 규모와 건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의 인수합병 추이를 살펴봄
- 2008년 이후 매해 1,200건 안팎의 M&A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GDP의 3%를 소폭 하회하던 M&A 규모는 2013년 이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5.8%에 달함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보다 M&A 건수는 크게 확대
- 2010년과 2015년 기준 M&A 건수와 금액은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비해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비중은 중국과 일본보다 높고 건당 규모는 일본보다 높게 나타남
  - 2015년 SK홀딩스와 SK C&C 사이의 약 27조원(230억달러) 규모의 합병으로 인해 2015년 GDP 대비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M&A 건당 평균 금액도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M&A 건수와 절대규모는 주요 국가들보다 작지만 우리 경제 규모 대비 M&A 시장규모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림 II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 M&A 추이



자료: Thomson-Reuters DB

<표 II -10> 주요 국가의 M&A 추이 비교

(단위: 건, 백만달러,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건수	미국	12,609	10,513	9,348	11,251
	영국	4,341	2,971	2,670	2,778
	중국	510	1,930	3,576	6,034
	일본	1,654	2,732	2,313	2,452
	한국	367	319	1,004	1,195
금액	미국	2,139,077	1,673,972	1,331,557	2,877,477
	영국	486,776	326,029	175,559	442,148
	중국	53,596	45,521	163,052	749,836
	일본	126,143	191,342	68,832	98,078
	한국	28,389	29,061	37,224	90,929
M&A 건당 평균 금액	미국	169.6	159.2	142.4	255.8
	영국	112.1	109.7	65.8	159.2
	중국	105.1	23.6	45.6	124.3
	일본	76.3	70.0	29.8	40.0
	한국	77.4	91.1	37.1	76.1
GDP 대비 비중	미국	20.8	12.8	8.9	18.6
	영국	30.1	15.6	7.8	16.6
	중국	1.5	0.7	1.3	3.9
	일본	3.8	4.9	1.6	2.2
	한국	3.3	2.5	2.5	5.8

자료: Thomson-Reuters DB

## 나. 주요국의 증권거래세 관련 입법 동향

### 1) 개관 및 개념

□ 증권거래세는 주요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1세기에 걸쳐 논쟁의 대상임

- 미국 대공황기, 경제학자 케인즈는 미국 월 스트리트의 증권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sup>14)</sup>

14) Thornton Matheson,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Issues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s(2011), p.12. <http://ssrn.com/abstract=1784582>.

- 금융시장 단기거래(short-term trading)에 대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투기 행위를 제한할 목적
  - 노벨상 수상자 James Tobin도 외환시장 혼란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동일한 조세제도를 권고<sup>15)</sup> 하는 등, 케인즈와 유사한 주장을 1972년에 한 바 있음<sup>16)</sup>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sup>17)</sup> 다시 등장
- 미국인들은 재정 절벽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증권거래세의 실행가능성을 재고할 것을 촉구함
  - 일종의 로빈후드세(“Robin Hood” type tax)인 증권거래세가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해악을 가져올 것인가는 현재로는 확실하지 아니하다<sup>18)</sup>는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증권거래세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거래(매각 및 매입)에 대한 조세이며 모든 또는 일부 유형의 증권(예컨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선물, 옵션)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의 공모를 포함할 수도 있고 단지 유통시장 거래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sup>19)</sup>
- 증권거래세는 거래시마다 금액 고정 수수료로서 부과되거나 증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증권거래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기관투자가 등 일부 유형의 거래자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음
  - 미국에서 증권거래세를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이 논쟁하였지만, 증권거래세가 그동안 국가 재정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음
  -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20세기 미국에서 증권거래세 입법의 변화가 심하였음<sup>20)</sup>

15) Ibid.

16) 그 이후 문헌으로, Tobin, James, (1978)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4.3-4 , pp.153~9.

17)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297.

18) Frank Holmes(2012), “Risk Of Going Hungary With A Financial Transaction Tax”,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2/09/27/risk-of-going-hungary-with-a-financialtransaction-tax/>

19) Gol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298.

20) Ibid.

## 2) 증권거래세 과세 찬반양론 및 실증연구

### 가) 찬성론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36년 케인즈가 증권거래세 찬성론의 논거를 최초로 제시
  - 심리학에 입각하여, 투기적 행위로 말미암아 시장가격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1984년 Tobin도 받아들였음
    - 토빈은 원래 외환시장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
  - 증권거래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 규제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활동을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통합을 증대시켜줄 것이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음<sup>21)</sup>
  
- 미국에서 증권거래세를 지지하는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 ① 증권거래세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연방의 세입을 증가시켜줄 것이라는 점
  - ②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의 투기적 행위를 억제시켜줄 것이라는 점<sup>22)</sup>
  - ③ 찬성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연방세입을 크게 증가시켜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이나 또는 국가채무 축소에 재정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sup>23)</sup>
  - ④ 또한 경제적 자원이 금융부문에 의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이처럼 풍부한 여유를 갖는 금융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sup>24)</sup>
  - ⑤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단기거래를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증권거래세는 자본시

21) Peter Gomb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France: Impact on Market Quality and Inter-Market Price Coordination" (White Paper Series No. 11, 2014), Center of Excellence SAFE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Finance in Europe, p.1.

22)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303.

23) Ibid.

24) Ibid.

장내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부 거래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초단기 고빈도 거래행위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sup>25)</sup>

- 경제정책연구소(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와 매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등 연구팀이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0.05%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시행함으로써 매년 약 3,530억달러를 거두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함<sup>26)</sup>
  - 한편 2009년 제출된 하원 법안 Peter Gomer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1989년 Summers and Summers(1989)<sup>27)</sup> 그리고 Stiglitz는<sup>28)</sup> 금융시장이 지나친 변동성(excess volatility)을 겪고 있으며, 증권거래세가 투기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는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장기 거래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
  - 더 나아가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단기 투기적 거래에 소비되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대표되는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인한 자본배분의 왜곡을 제거해 줄 것이라 주장<sup>29)</sup>
  -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자들은, 제안된 조세제도가 ① 기관투자가(개인 v. 법인) 형태, ② 거래유형(단기거래자 v. 장기거래자) 및 ③ 소득소득(고수입 납세자 v. 저수입 납세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하게 됨<sup>30)</sup>
  
- 미국의 증권거래세 제안자들은 파괴적 투기(destructive speculation)를 억제하고 시스템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특히 거래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sup>31)</sup>
  - 수익이 나는 단기거래라 할지라도 그 빈도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당해 납세자에게 부여하게 될 부담은 그들의 거래 빈도에 좌우됨

---

25) 증권거래세 찬성론에 대한 자세한 논거에 대해서는 Karl Habermeier and Andrei A. Kirilenko(2003), p.4.  
26) Dean Baker, Robert Pollin, Travis McArthur, and Matt Sherman(2009), p.1. <http://cepr.net/documents/publications/ftt-revenue-2009-12.pdf>.  
27) Summers, L. H., and Summers, V. P.(1989), pp. 261~286.  
28) Stiglitz, J. E.(1989), pp. 101~115.  
29) Ibid.  
30)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304.  
31) Ibid.

## 나) 반대론

- 증권거래세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가 투자가의 자본배분(capital allocation)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질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경제에 부담을 지운다고 봄<sup>32)</sup>
  - 반대론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Schwert and Seguin(1993)는 증권거래세가 투자를 억제하는 자본비용(capital costs)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함<sup>33)</sup>
  - 시장의 효율성 훼손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에 반대함
    -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조장하는 유동성 훼손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도 증권거래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포함
    - 아리조나 대학의 경제학자 Allen Atkins and Edward Dyl는 증권거래세가 주가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을 줄여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sup>34)</sup>
    - 또한 증권거래세가 시장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개인 투자가와 중산층에 의도하지 아니한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sup>35)</sup>
    - 한편 증권거래세 부과는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거래를 하지 않는 구간(no-trade zone)을 확대한다고 전제하면서, no-trade zone내의 증권의 가격은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않게 되고 차익거래 유인(arbitrage opportunities)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시장을 왜곡한다는 논거를 주장하기도 함<sup>36)</sup>

## 다) 실증연구결과

- 증권거래세에 대한 찬반론은 이론적으로는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일본의 ‘히로유키 오노’와 ‘미노루 하야시다’는 증권거래세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음

32) Thornton Matheson(2011), op.cit.

33) Schwert, W., and Seguin, P. J.(1993), pp. 27-35.

34)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306.

35) Dale Brown(2012), <http://www.advisorone.com/2012/10/04/a-securities-transaction-tax-will-hurt-advisors-an>.

36) Matheson, T.(2011), op.cit.

- 이들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권거래세 폐지 마지막 시기와 그 직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증권거래세 부과가 일본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
    - 즉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비용의 변화에 따라 단기거래량도 변화를 보였다고 함<sup>37)</sup>
    - 나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고 결론지음<sup>38)</sup>
  - 한편 Baltagi 등은 2006년 발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증권거래세가 0.3%에서 0.5%로 인상된 결과 증권거래량이 3분의 1이나 감소하였다고 주장함<sup>39)</sup>
  - 아울러 중국 학자들이 분석한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발표된 중국의 어느 학자의 연구는, 일본의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함
- 반면 이에 앞서 1998년 다른 중국 학자의 연구는 홍콩, 일본, 대한민국 및 타이완에서 이루어진 1975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14번의 거래세 변화가 거래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의 연구는 증권거래세를 올리거나 신설하였다고 하여 주식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파악된 결과치들은, 해당 분석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아시아 증권시장에서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추론함<sup>40)</sup>
- 이상 거시적 실증연구 외에도, 여러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아래는 그 실증적 연구들이 각각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향방에 따른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들을 도표화한 것임<sup>41)</sup>

37) Hiroyuki Ono and Minoru Hayashida, "A Turnover Tax, Transactions Costs and Stock Trading Volume: The Case of Japa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2005), p.4.

38) Ibid.

39) Thornton Matheson(2011), op.cit., p.23.

40) Eric M. Schmitterer(2012) [http://gwbccenter.imgix.net/Resources/Evidence\\_in\\_Opposition\\_to\\_Securities\\_Transaction\\_Taxes\\_The\\_Case\\_of\\_Japan.pdf](http://gwbccenter.imgix.net/Resources/Evidence_in_Opposition_to_Securities_Transaction_Taxes_The_Case_of_Japan.pdf).

41) Filip Šramko(2015), p.56.

<표 II -11> 증권거래세 향방에 따른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연구자(연도)	분석대상 국가	부과 또는 행위	관찰기간	추정 영향		
				변동성	거래량	수익
Roll(1989)	초국가간	증권거래세	최대 20일	영향없음	-	-
Jones and Seguin (1997)	미국	위원회 규제완화	2년	positive	-	-
Pomeranets와 Weaver(2013)	미국	증권거래세	2년	Positive/ no effect	negative	negative
Hu(1998)	한·일·대만 ·홍콩	증권거래세	80주	no effect		negative
Baltagi 외(2006)	중국	증권거래세	1년	positive	no effect	negative
Su and Li	중국	증권거래세	최대 120일	mixed	-	negative
Wang and Li (2012)	중국	증권거래세	최대 6개월	mixed	-	negative
Liu(2007)	일본	증권거래세	4년	-	-	negative
Liu and Zhu(2009)	일본	위원회 규제완화	2년	negative	-	-
Umlauf(1993)	스웨덴	증권거래세	-	positive/ no effect	-	negative
Saporta and Kan(1997)	영국	증권거래세	-	no effect	-	-
Bond 외(2005)	영국	증권거래세	-	-	-	-
Phylaktis and Aristidou(2007)	그리스	증권거래세	최대 6년	mixed		
Hau(2006)	프랑스	Tick-size change(최소한 가격변동한도 규모변동)	최대 5년	positive	negative	-
Becchetti 외 (2014)	프랑스	증권거래세	최대 180일	negative	mixed	negative/ no effect
Capelle-Blancard 와 Havrylchuk (2014)	프랑스	증권거래세	1년	no effect	no effect	negative
Meyer 외 (2013)	프랑스	증권거래세	4개월	-	negative	negative
Colliard and Hoffmann (2015)	프랑스	증권거래세	5개월	no effect	negative	negative
Haferkorn and Zimmermann (2013)	프랑스	증권거래세	최대 80일	no effect	negative	negative/no effect
Coelho(2014)	프랑스 이탈리아	증권거래세	최대 4개월	no effect	no effect	프랑스: negative 이탈리아: no effect
Rühl and Stein (2014)	이탈리아	증권거래세	120일	positive	negative	no effect

자료: Filip Šramko, The Impact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Quality: Evidence from France and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Sciences*, Vol. IV, No. 3/ 2015, p.56.

-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증권거래세 찬반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일의적 방향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음
  - 증권거래세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널리 이루어졌음에도, 증권거래세가 시장 품질(market quality)<sup>42)</sup>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일의적 견해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 실증적 연구들이 건수는 많지만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증적이라 하지만 그 결과들은 상황이 급변하는 오늘날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3) 주요국의 입법동향: 전반적 폐지 방향 속 입법론 대두

#### 가) 개요

- G-20 국가들의 경우, 현재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지분(equity share)의 제2차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임
  - 중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및 영국은 회사 지분(shares) 매입 또는 매각에 대하여 과세함<sup>43)</sup>
    - 이 증권거래세는 공식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분(share)에 대해서 또는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지분(share)에 대해서,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어떠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개별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법인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또는 비법인 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도 있음<sup>44)</sup>
-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거래 지분의 시장가액에 근거하는 종가세(ad valorem tax)의 형태로 과세됨
  - 동 과세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세율은, 0.1%에서 0.5%의 범위로 나타남

42) 시장품질(market quality)은 투자자와 중개인이 거래장소를 선정할 때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가 된다. 다양한 거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암묵적 탐색비용(implicit search cost)이 있기 마련이다.

43) Thornton Matheson(2011), op.cit., p.7.

44) Ibid.

- 이 증권거래세를 지분파생상품(equity derivatives)까지 확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예컨대, 인도는<sup>45)</sup> 지분선물상품과 옵션상품(equity futures and options) 그리고 원주식(underlying shares)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부과
  - 선물에 대해서는 인도가격(delivery price)에 근거하여 과세, 옵션상품은 그 할증(premium)가격과 마이너스(-)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권리행사(strike) 가격에 대해 과세
- 영국 인지세(stamp duty)는 지분옵션(equity options)의 마이너스(-)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 마이너스(-) 권리행사가격에 대해 부과되지만, 옵션할증(option premium)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선물계약으로 매입된 영국회사 지분(equity)의 인도가격에도 적용됨
- 일부 G-20 국가는 상장주식(listed shares)에 대해 非조세적 성격의 부담금(charge)을 징수함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그 규제활동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식시장 거래가격의 0.017% 정도의 부담금을 징수
  - 터키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에 대하여, 0.1%의 최초 수수료(initial fee)를 부과하며 매년 0.025%의 상장유지 부담금을 징수

#### 나) 폐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움직임

- 한편, 지난 수십 년 동안을 돌아켜보면, 국가들의 주식거래세(share transaction taxes) 부과는 하향추세를 나타냄
  - 미국은 일찍이 1966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일본은 1999년 주식거래세를 폐지했음
  - 독일은 1991년 주식거래세를, 그리고 1992년에는 자본세(capital duty)를 폐지
  - 오스트레일리아는 2001년 주식양도에 대한 연방인지세를 폐지
  - 이탈리아는 2000년에 자본세와 거래세를 크게 인하했으며 프랑스는 2009년 주식거래세를 폐지했음

45) 인도의 증권거래세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대체조세로서 2004년 도입되었다. Ibid.

## 다) 일본의 증권거래세 도입과 폐지

- 1953년 일본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으며 처음에는 주식거래의 0.15%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했으며 1981년에는 0.55%로 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sup>46)</sup>
  - 일본은 1989년 이후부터 1999년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Japanese Big Bang의 일환으로 수차례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sup>47)</sup>
  
- 1998년 일본 조세위원회는 “금융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거래세(turnover tax)가 국제기준보다 높은 때에는 거래 자체를 일본 밖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선언
  -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일본 재무성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엔화 증권에 외국인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게 될 것이라고 판단<sup>48)</sup>

## 라) 프랑스 증권거래세 재도입

- 증권거래세 또는 그 유사한 조세를 부과 또는 부과를 고려중인 여러 나라들 중 프랑스는 2012년 8월 증권거래세를 재도입하면서 다양한 면세요건 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을 포함시킴
  - 프랑스 대기업의 지분주식 매매에 대해 0.2% 세율의 조세를 부과
    - 프랑스 증권거래세는 2012년의 추가경정예산법(Supplementary Budget Act) 제5조에 의하여 도입
    - 동법은 다음의 세 가지 조세를 도입했음
      - ①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과 기타 관련 증서(instruments)의 취득에 대한 조세
      - ② 초단타거래세(HFT tax)
      - ③ 국가부채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s on sovereign debt)<sup>49)</sup>

46) Eric M. Schmitterer(2012), op.cit.

47) Christopher L. Culp(2010): 4,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572962> or <http://dx.doi.org/10.2139/ssrn.1572962>.

48) Eric M. Schmitterer(2012), op.cit.

49) Filip Šramko(2015), op.cit. p.58.

- ① 유형의 프랑스 증권거래세는 가장 유동성이 있는 증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포지션에 대해 과세하고, 시장조성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함
  - ①유형 증권거래세는 주식발행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에 접근토록 해주는 증권의 취득(acquisition)에 대해서만 적용
    - 즉, 양도인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래면, 과세대상증권(instruments)과 과세대상시장(markets)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프랑스 증권거래세는 가장 유동성 있는 지분증권(equity instruments)에 대해서만 부과<sup>50)</sup>
    - 또한 그 지분증권(instruments)이 프랑스, EU 또는 외국의 거래소(trading venue)에서의 거래가 허용된 것이어야 함<sup>51)</sup>
  - 증권거래 취득세는 프랑스법에 의하여 상장된 회사가 발행한, 직전년도 12월 1일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이고 (프랑스)국내외의 규제시장(regulated markets)에서의 거래가 허용되는 지분(equities) 또는 그 유사 증서(instruments)의 매수에 대하여 적용
    - 이 조세는 채무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sup>52)</sup>
  - 프랑스는 매우 큰 회사채(corporate bonds) 시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조세를 지분시장에 국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음<sup>53)</sup>
  - 과세 범위에서 파생상품을 제외하였다는 점이 특징
  - 증권취득에 대해 0.2% 세율의 조세가 부과되고, 특정 거래일에서의 순포지션(net position)에 대하여 적용
  - 조세설계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음.<sup>54)</sup> 즉, 증권거래세가 자본비용 및 유동성에

50) Peter Gomb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2014), op.cit., p.2.

51) French Government(2013), Retrieved January 14, 2013, from <http://www.legifrance.gouv.fr/>.

52) Filip Šramko(2015), op.cit., p.57.

53) Bijlsma, M., Zwart, G.T.J.(2013)

<http://bruegel.org/2013/03/the-changing-landscape-of-financial-markets-in-europe-the-united-states-and-japan/>.

54) 적용면제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1차시장(primary market)에서의 취득(Acquisitions)
- ② 정산/예탁과 관계없는 거래를 제외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s: 상품거래업무 중에서 위탁 증거금의 예탁, 모든 차액계정의 수불 등 청산업무를 행하는 회사) 및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취득
- ③ 시장조성(market making) 활동과정에서의 취득
- ④ 유동성계약(liquidity agreements)에 의한 취득
- ⑤ 구조조정 및 집단내부간(Restructuring and intra-group) 취득
- ⑥ 재매입계약(repurchase agreements) 등 일시적 취득 증권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부과의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

- 시장조성(market making)<sup>55</sup>과 관련된 헤징 활동(hedging activities)은 면세됨

□ 초단기매매에 부과되는 ②유형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초단타거래세는 하루 동안의 취소율 또는 주문변경률(rate of cancellation or order modification)이 일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때에 부과됨
- 세율은 기준치를 초과한 취소 또는 변경된 주문 금액의 0.1%
- 초단타거래세는 프랑스시장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sup>56</sup>

□ 한편 시장유동성이나 공모(公募: public offering)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다양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음<sup>57</sup>

-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증권금융(securities financing)에 대한 금융거래세 면제
- 그 밖에도, 어음교환소(clearinghouse) 또는 증권예탁소(securities depository)가 수행하는 거래, 집단내부(intra-group) 거래, 구조조정에 의한 거래, employee saving schemes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면세<sup>58</sup>
- 이상 면세 제도들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래자의 필요(needs)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됨

⑦ employee savings scheme에 의해 취득한 증권

⑧ 주식과 교환가능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채권(bonds)의 취득.

Filip Šramko,(2015), op.cit. p.58(note 25.).

55) 시장조성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조성 [market making]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966&cid=42107&categoryId=42107>

56) Filip Šramko,(2015), op.cit. p.58

57) Peter Gomb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2014), op.cit., p.3.

58) Gol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ldberg.pdf>. p.303.

- 2017년 금융법에 포함된 조치들은 프랑스 금융거래세에 큰 변화를 주고 있음
  - 2017년 1월 1일부터 금융거래세율이 종전 0.2%에서 0.3%로 인상됨
  - 일일거래(intraday trading)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확대적용하도록 개정됨<sup>59)</sup>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2016년 12월 29일의 결정에서 이러한 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함
  - 반면 일일거래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것은, 그 실효적 시행에 앞서 많은 법적·기술적 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sup>60)</sup>
  
- 프랑스의 현행법상 금융거래세를 담당하는 사람은 “투자서비스제공자”(investment service provider)라고 불리며, 주식 소유자(share owner) 또는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를 협상하는 자들로부터 거래를 하는 자들로부터 받은 거래주문을 집행하는 자임
  - 그러한 거래가 위와 같은 투자서비스제공자 개입 없이 수행되는 때에는 custody account-keeper로서 행동하는 법인들(entities)이 그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sup>61)</sup>
    - 중앙예탁결제기관(Central depository)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프랑스에서는 Euroclear France가 중앙예탁결제기관임
  - 주식 소유자는 투자서비스제공자에게 세금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서비스제공자는 그 정보를 중앙예탁결제기관에 보내야 함<sup>62)</sup>
    - 2017년 금융법 제62조는, 중앙예탁결제기관에 보내야 하는 정보의 성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모든 일일거래에 대해 과세하려면, 그 하위법에서 그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하위법을 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두말할 여지없이 그 조치 시행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하여 非은행 금융중개회사들(financial intermediaries)이 사용하는 IT 시스템 그리고 이들 회사들이 그 고객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sup>63)</sup>

59)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tax/250117-changes-french-fft-2017-finance-act-measures>

60) Ibid.

61) Ibid.

62) Ibid.

63) Ibid.

- 2012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주식 및 채권에 대해 0.1%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가 제안됨<sup>64)</sup>
  -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임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재정·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시행하거나 증액하고 있음
  
- 2012년 당시 EU에서의 증권거래세 도입 제안에 대하여,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함
  - 현재 EU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고자 하는 EU(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을 포함하는) 10개 회원국들 간에 EU 차원에서 일일거래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임
    - 유럽이사회는 2013년 1월 13일 회원국들이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 procedure: ECP)를 사용하여 EU 공동금융거래세를 정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해당 조치의 시행 과정은 당사국들 간의 의견불일치로 지체되고 있음<sup>65)</sup>
  - 그러나 2017년 금융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재정장관(Minister of Finance)은 EU 공동금융거래세 시행에 참여하는 회원국들 간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EU 공동금융거래세의 핵심원칙에 관한 합의에 조만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sup>66)</sup>
    - 그렇다면 이에 관한 향후의 지침(Directive)이 가까운 장래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만약 EU 금융거래세가 시행된다면, 프랑스의 금융거래세와 EU 금융거래세 모두 일일거래(intraday trading)에 대해 과세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위험도 발생할 것임<sup>67)</sup>

64) Mark P. Keightley(2015) <https://fas.org/sgp/crs/misc/R42078.pdf>.

65) Ibid.

66) Ibid.

67) Ibid.

## 마) 이탈리아

- 이탈리아 증권거래세는, 프랑스 증권거래세 도입 8개월 후에 시행됨
  - 이탈리아의 증권거래세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면서도, 조세회피(tax evasion)의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는 특징이 있음
  
- 이탈리아는 두 가지 유형의 증권거래세를 시행하는바,
  - ① 지분 양도에 대한 부과와
  - ② 초단타거래조세에 대한 부과가 그것임<sup>68)</sup>
  
- 이탈리아법에 따라 상장된 회사 또는 이탈리아를 거주지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instruments)의 양도 또는 그 법적 거주지와 관계없이 다른 법인들이 발행한 상기의 그에 상당하는 증서의 양도에 대해서 적용됨
  - 규제시장(regulated markets)과 대체거래플랫폼(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MTFs)에서는 그 세율은 0.1%이며 장외거래시장 거래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sup>69)</sup>
    - 다만, 장외거래시장에서는 차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됨
    - 시가총액이 5억유로 미만 회사<sup>70)</sup>의 지분거래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sup>71)</sup>
  - 파생상품거래는 고정된 금액이 과세되는바, 그 금액은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의 거래유형과 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됨
  - 한편, 지분양도에 대한 조세와 관련한 부과 면제 예외조항들은 프랑스와 유사하게 설치함
    - 이탈리아의 초단타거래 과세는 프랑스와 유사하지만,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한 과세대상 최저기준치(threshold)와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와 약간 다름

68) Filip Šramko(2015), op.cit. p.59.

69) Ibid.

70)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목록은 이탈리아 재무부가 매년 공표한다. Ibid.

7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최저치(the threshold market capitalization)는 전년도 11월의 평균 시가총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최저기준치(threshold) 산정이 프랑스보다 더 정확하며 시가총액의 단기적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bid.

## 바) 미국 증권거래세 제도 연혁

### (1) 1914년 도입 및 1965년 폐지

-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관세수입이 줄어들고 국가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던 1914년 증권거래세를 입법화했음
  - 그 당시 제출된 증권거래세 법안을 논의하였던 하원은 재정적자를 다른 재원에서 나오는 조세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입각하여 입법화한 것임<sup>72)</sup>
  - 1914년 증권거래세는 주식 1주의 액면가에 0.02%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1932년과 1958년 사이에 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세율이 0.04%부터 0.06% 사이에서 변화됨
    - 1959년 세율은 종전과 달리 액면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으며 세율은 0.04%로 복귀
  - 그러나 1965년 의회는 1965년 Excise Tax Reduction Act of 1965에 의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음
    -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한다는 목적을 가짐<sup>73)</sup>
  
-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증권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 부과<sup>74)</sup>
  - 1934년 증권거래법 Securities and Exchange Act 제31조에 의하여 금융산업규제청(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등과 같은 자율규제기구와 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s)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증권의 규모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sup>75)</sup>
    - 자율규제기구는 그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시 그 회원인 중개거래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거래부담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초래<sup>76)</sup>

72)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298.

73) Ibid.

74) “SEC Fee”—Section 31 Transaction Fees, SEC(Aug. 15, 2007), <http://www.sec.gov/answers/sec31.htm>.

75)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299.

76) “SEC Fee”—Section 31 Transaction Fees, SEC (Aug. 15, 2007), <http://www.sec.gov/answers/sec31.htm>.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대해 규정된 금액에 가능한 한 접근하도록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년마다 또는 반년마다 수수료를 조정<sup>77)</sup>

## (2) 최근 증권거래세 제도입론 대두

- 2008년 이후 의회는 빈번하게 증권거래세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한 증권거래세 법안은 없음
  - 2011년 제111차 의회는 몇 개의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안했으나 증권거래세 시행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
    - 한 사례로서, Peter DeFazio 하원의원은 일자리 창출 및 적자 감소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권거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을 제안<sup>78)</sup>했음
    - 이 제안은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같은 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음
  -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112차 의회는 이와 유사한 6개의 법안이 제출됨. 이들 법안들은 중산층 지원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3년 제113차 의회에서도 종전의 증권거래세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제출되었음
  - 2014년 제114차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제출되었음<sup>79)</sup>
- 증권거래세 입법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음. 의회는 현재의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확대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음
  - 증권거래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세가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게 될 것이며 국가 재정수입을 증가시켜줄 것이라고 판단함
  - 반면에 증권거래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가 시장왜곡을 초래할 것이며 중산층에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판단함
  - 이러한 견해의 충돌은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임

77) Goldberg, Michelle, et al.(2013) <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p.299.

78) H.R. 676, H.R. 1068, H.R. 3151, H.R. 3379, H.R. 4191, H.R. 4646, and S.2927 등의 그 예이다.

79) Mark P. Keightley(2015), op.cit.

- 찬반론 모두 보다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증권거래세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인식은 무모한 투기적 거래를 통제하면서도 금융시장의 통합성을 보전하는 입법적 타협안의 가능성을 보여줌

### 3. 시사점

- 프랑스 증권거래세 도입은 금융시스템의 규제의 일환이며, 최근의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편임
    - 프랑스는 증권거래세 면세 사유에 기업구조조정을 포함시킴
    - 투기적 거래 등 자본시장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음
    - 프랑스를 선례로 삼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증권거래세 면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 등 여러 사유를 열거적으로 예시하는 입법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시장효율성 보호,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억제, 약탈적 거래활동(predatory trading activities) 억제 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임<sup>80)</sup>
  - 그러나 프랑스의 그러한 규제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증권거래세의 일반적인 개념은 학계와 관계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임
    - 이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증적 연구의 성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증권거래세가 시장 유동성과 시장 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이론상으로는 예상될 만하지만, 실증분석이 충분한 것은 아님
- 10개 EU 회원국들이 증권거래세 시행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시행 과정에서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나 실증적 연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임

80) Peter Gomb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2014), op.cit., p.7.

- 미국도 현재 증권거래세 입법안이 매해 제출되었지만 입법화 여부는 불확실함
  - 미국 의회는 현행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수료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증권거래세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운용을 개선하고 연방 세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임
  - 반대로처럼, 시장왜곡과 중산층에게 의도치 못했던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증권거래세 찬성론과 반대론의 충돌은 증권거래세 시행의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보다 엄격한 금융규제가 증권거래세를 통하여 해소하려는 문제들 중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일치를 보임
  - 과연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통합성(the integrity of financial markets)을 보전할 것인가는 커다란 관심사항이 될 것임



### Ⅲ. 정책타당성 평가





### Ⅲ. 정책타당성 평가

#### 1. 법리적 검토

##### □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 기업구조조정은 자본주의에서 혁신의 지름길일 수 있음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유지 및 강화를 통하여, 혹시 소멸될 수 있을 기업들을 다시 경제무대로 복귀시킴으로써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경제성을 높임
-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만일 과세청이 과세 계기(taxable event)로 삼는다면, 그 경제에 속한 기업들은 한계선상에 도달할지라도 기업구조조정에 회피적·도피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고, 상기 기업구조조정의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됨
  -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합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

#####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은 IMF 위기 이후 다양한 개정의 역사를 맞게 됨

- 대표적으로 「회사법」(「상법」 ‘제3편’, 1962.1.20. 제정, 1963.1.1. 시행)은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한 이후, 종전까지 어쩌다 한 번 개정하던 오랜 시기를 마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나긴 연속적 개정의 길에 나서게 됨
- 물론 그 밖에도 예컨대 도산법제는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되고 있음
- 경제성장 이후 처음 맞이한 경제적 조정과 그로 인하여 수명을 마감시켜야 할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들 개편 테마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기업들을 연착륙시키고 다시 경제무대로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마감시키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은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법률과 경제적 여건상 주요한 테마가 되어 왔으며, 조세법과의 관련성은 특히 깊음

- 한국 증권거래세 과세의 수준
  - 한국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함
  - 그럼에도 최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파생상품 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입법됨
  -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논의되었던 토빈세 등 외환 및 채권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한 것임(2013년 4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 한국 증권거래세 제도 연혁
  - 1978년 「증권거래법」 개정, 1979년 시행
  - 초기 0.5% 과세. 이후 1984년 개정(0.2%), 1994년 개정(0.35%), 1995년 개정(0.3%), 1996년 개정(0.15%).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 0.15% 가산
  
- 금융거래세, 주식거래세 대상
  -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 한국은 주식 자본이득 중, 상장주식의 자본차익에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그 외에는 과세하지 않음
    - 즉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과세함
  
- 외국 개관
  - G20 국가들의 금융거래세 부과 유형들을 보면,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제일 많음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남아공, 한국, 영국,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과 G20 이외의 지역으로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sup>81)</sup>
  
- 찬반론<sup>82)</sup>
  - 찬반론들은 전술한 외국에서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개관한 내용과 거의 같음
  - 즉 찬성론은 증권거래세 등 유형의 조세는, 자본시장의 단기 투기거래를 억제하며 시장의 거품발생과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과세 공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81) Matheson, T.(2012), pp 884-912.

82) 이영한,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조세연구』(13권 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12

- 반대론은 증권거래세 등 유형의 조세는, 자본비용을 상승시키고 포트폴리오 구성, 기업자본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직접 거래비용 상승을 불러오고 간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함
  - 금융거래세 도입시 비과세 대상 대체투자대상 또는 다른 비과세국가들을 모색함으로써 자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함

### 가. 기업구조조정 운용을 위한 조세법 체계

- 기업구조조정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당면한 주요 경제현안 중 하나임<sup>83)</sup>
  - 현재 조선업종이나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철강이나 건설, 석유 화학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필요성도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음<sup>84)</sup>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형태 또는 소유구조의 개편을 수반하는 제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의미
    -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간주됨<sup>85)</sup>
- 한국에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해당 세법 내에서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항은 여러 곳에 산재<sup>86)</sup>
  - 「법인세법」 중 기업 합병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제2장 제1절 제6관(「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5~제47조의3)와 제2장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47조의4~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는 제5장의 10(제121조의26~제121조의32)에 적시되어 있음

83) 정래용·최헌섭, 「기업구조조정 세법의 개선 방안 연구」, 『홍익법학』(17권 4호), 2016, p.29 등

84) 정래용·최헌섭(2016), p.29.

85) 정래용·최헌섭(2016), p.29.

86) 김종봉·윤태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13권 2호), 2012, p. 179.

-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특례제도 이외에 본 심층평가의 대상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에 개별적으로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중 일부가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제6관, 「조특법」 제2장 제5절~제6절, 동법 제5장의10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례와 비교하여 본 심층평가 대상인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대부분은 동 심층평가 대상인 증권거래세 이외에 자산의 양수도 관련 세부담에서 발생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지분의 거래에 수반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은 주된 특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나. 기업구조조정과 과세

- 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회사기업으로 구분되며, 회사기업은 자본축적의 편리성과 개인이 동원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 형성에 손쉽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아무리 부유한 자연인일지라도 위험부담을 감안한다면 실상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은 얼마 안 되게 마련이기 때문임
- 자본주의의 꽃인 회사제도는, 설사 어떤 회사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사회적·국가적으로 계속 존속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설계해 놓음으로써, 사라질 뻔한 회사로 하여금 전체 경제에 더욱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회사법」 등 기업의 조직 등 단체법적인 성격을 담당하는 법률의 경우, 회사의 형태나 사업목적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기존 기업이 해산/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활동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세제도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범위까지는, 기업의 형태나 사업목적의 변경과 같은 기업의 동적인 변화무쌍한 경제현상에 발맞추어 적응하려는 노력들에 대하여, 과세 계기(taxable event)로 삼지 않도록 하여야 함<sup>87)</sup>
-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세부담에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하여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임<sup>88)</sup>
- 미국의 경우 이를 tax-free-reorganization이라 하여,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상 다양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음<sup>89)</sup>

#### 다. 조세 감면 없는 기업구조조정

- 자본주의 또는 그 선구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스스로를 꽃피우는 데 기여한 기업들로 하여금, 부단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제도 또는 사업재편제도를 설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조세감면 없는 기업구조조정은 생각하기 어려움
  - 기업이 영리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자본에 대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과세 계기(taxable event)로 삼는다면, 구조조정 후에 기업에 존속될 자산은 감소할 것이므로, 구조조정 전과 같은 양/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곤란을 줄 수 있음
  - 이처럼 기업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적응하려는 유인을 갖게 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할지라도 구조조정을 주저하도록 할 것이고, 기업의 유지·계속성을 침해할 수 있음<sup>90)</sup>
  - 물론 과세혜택에 대한 오·남용을 초래하고 심각한 과세 불공평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주의를 요함

87) 한만수,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세경사, 1999, p.3.

88) 위의 책.

89) 위의 책.

90) 한만수 위의 책 p.5.

## 2. 정책목적의 유효성

###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 1)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 본 조항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의 투자신탁회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됨(「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 직접적으로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M&A형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를 이용해 외국인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투자 규모를 가늠함
  
- 최근 M&A형 FDI 규모는 여전히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추이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M&A형 FDI 투자금액은 2003년 29.43억달러에서 2004년 61.70억달러로 증가했다가 2007년 금융위기 24.83억달러로 감소한 후 최근 2014년 79.80억달러, 2015년 68.04억달러, 2016년 62.73억달러로 증가함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함
    - FDI는 투자유형에 따라 크게 M&A형 FDI와 Greenfield형 FDI로 구분됨
      - M&A형 FDI는 기존 법인이나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함
      - Greenfield형 FDI는 새로운 법인이나 기업의 설립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함
  - 2005~2010년의 기간 동안에는 M&A형 FDI 투자 건수, 투자금액, 건당 평균 투자규모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투자건수보다는 투자금액과 건당 투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1~2016년 전 기간 투자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0.3%이나 2005년 이전 평균

증가율은 5.6%, 2005~2010년 평균 증가율은 -7.7%,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3.3%로 나타남

- 투자금액과 건당 평균 투자액의 증가율 추이도 이와 유사하게 2005~2010년 기간 동안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2010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투자금액과 건당 평균 투자액의 2001~2016년 전체 기간 평균 증가율은 각각 5.9%와 5.6%로 2005년 이전과 2010년 이후 기간의 높은 증가세가 2005~2010년 기간의 감소세에 의해 크게 완화된 모습

○ Scholes and Wolfson(1990), Swenson(1994) 등의 기존 연구는 관련 세부담이 낮을수록 FDI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M&A형 FDI의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으나 최근 투자건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외국직접투자가 필요하므로 여전히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1> M&A형 FDI 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투자건수	투자금액	평균 투자액
2001	298	2,649	8.9
2002	285	2,085	7.3
2003	288	2,943	10.2
2004	339	6,170	18.2
2005	371	5,268	14.2
2006	363	4,309	11.9
2007	344	2,483	7.2
2008	332	4,431	13.3
2009	268	3,375	12.6
2010	249	2,015	8.1
2011	245	1,971	8.0
2012	247	3,748	15.2
2013	241	4,978	20.7
2014	266	7,980	30.0
2015	309	6,804	22.0
2016	312	6,273	20.1
평균증가율	2001~2005	5.6	18.8
	2005~2010	-7.7	-17.5
	2010~2016	3.8	20.8
	2001~2016	0.3	5.9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

## 2)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주식의 교환 및 이전 관련

- 본 조항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5584호, 1998. 12. 28.)되면서 신설되었고 일부개정(법률 제6538호(2001. 12. 29.), 법률 제9272호(2008. 12. 26.), 법률 제9921호(2010. 1. 1.))됨
  -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 주식의 교환 및 이전의 직접적인 규모에 대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음
  -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및 분할 건수를 통하여 합병 및 분할의 변화 추이를 통해 본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봄
  
- 2000년대 초반 이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합병 및 분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합병 및 분할 공시 합계는 2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2013년 이후 60건 안팎의 공시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합병 및 분할 공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
    - 최근 들어 2013년 분할 21건과 합병 43건이 공시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60건 안팎의 합병과 분할 공시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합병 45건과 분할 20건의 공시가 발표됐으며 한국거래소(2017)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의 합병 및 분할 공시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8.6%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초반 이후 상장기업들의 분할 및 합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분할 및 합병 기업들 중 본 조항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본 조항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표 III-2>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및 합병 추이

(단위: 건)

	분할	합병	합계
2003	9	19	28
2005	14	29	43
2007	21	33	54
2009	27	28	55
2011	13	38	51
2013	21	43	64
2014	20	40	60
2015	10	44	54
2016	20	45	65

주: 1. 상기자료는 공시 건수 기준임

2. 분할합병은 매해 1건 내외의 공시건수가 있으나 전체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보고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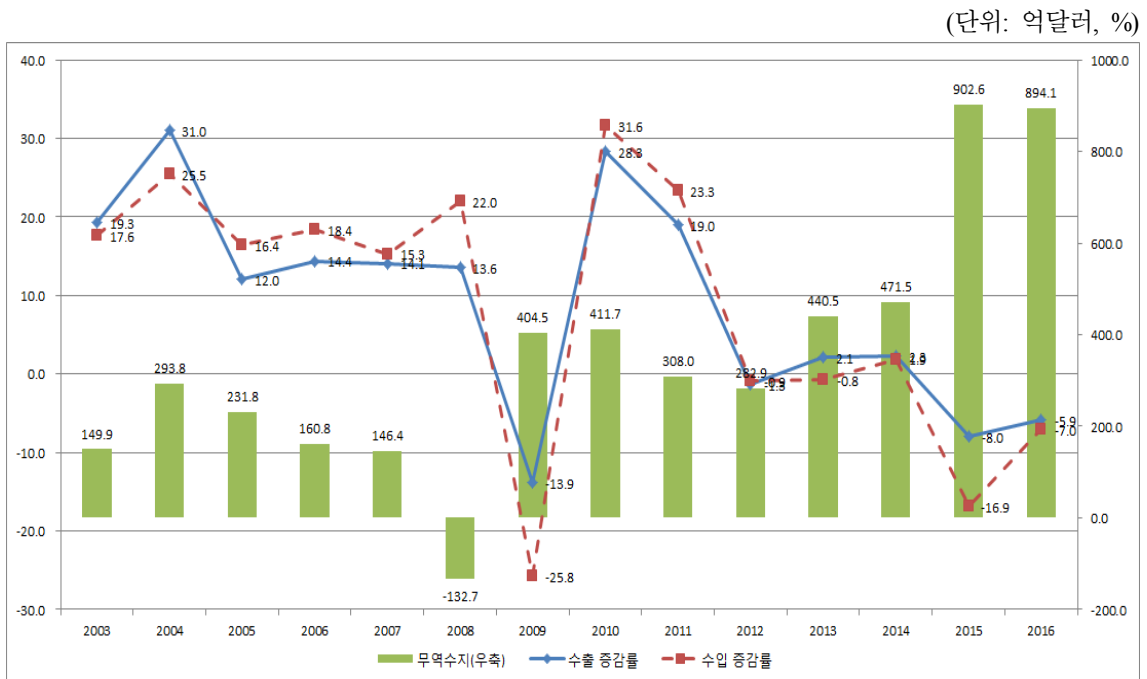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협조자료

### 3) 선제적 사업재편기업 관련

- 본 조항은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목적으로 신설됨(법률 제13560호, 2015.12.15.)
  - 수출입 동향, 기업 실적, 한계기업의 추이 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함
  
- 2010년 이후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둔화 또는 감소하는 추이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둔화 및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09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2015년과 2016년 수출 감소세를 시현했으며 수입은 수출 추이와 같은 양상으로 둔화됨
    -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3.9% → 2010년 28.3%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8.0%, 2016년 -5.9%로 최근 다시 둔화되는 추세임

- 2015년과 2016년의 무역수지가 9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출 둔화 및 감소세보다 더 큰 수입 둔화 및 감소세에 기인하는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에 불과함
-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4%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 2.07%, 2014년 1.26%, 2015년 0.29%로 둔화되는 추세임
-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의 둔화는 이자보상비율의 증가가 둔화됨을 뜻하고 이는 영업이익의 감소 또는 이자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업의 재무적 조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은행(2016)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이 1%p 증가 시, 이자보상비율은 0.88%p 상승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짐
- 전년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11년 4.49%, 2012년 4.11%, 2013년 4.14%, 2014년 3.96%, 2015년 4.67%로 4%대 수준에 머무르며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둔화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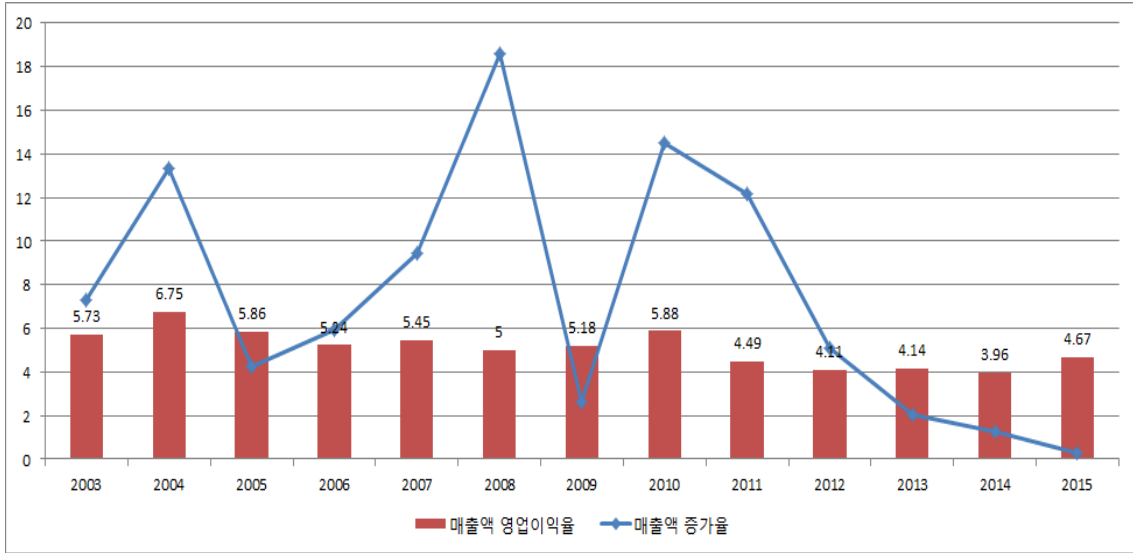
[그림 III-1] 수출입 실적 추이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실적

[그림 III-2] 기업실적 추이

(단위: %)



주: 1. 국내 법인세 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함  
 2. 증가율은 전년 대비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의 수와 한계기업 비율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는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동 제도의 잠재적 활용 기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계기업의 비율 2011년 9.34% → 2015년 12.70%, 한계기업의 수 2011년 1,736개 → 2015년 2,359개로 2011년 이후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회생가능성이 어려운 부실기업인 한계기업의 비율과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3> 한계기업의 추이

(단위: %, 개)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계기업 비율	9.34	10.30	11.53	12.46	12.70
한계기업 수	1,736	1,914	2,141	2,315	2,359

주: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18,577개를 대상으로 함  
 자료: 최현경·박진(2016), 23쪽 <표 3-1>

- 사업재편을 통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동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
  - 현재 「기업활력법」에 따라 선제적 사업재편을 승인 받은 국내 기업으로는 한화케미칼-유니드, 유시스, 아이씨티, 삼강엠앤티, 종로의료기 등이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 누적 승인기업은 총 37개사임
    - 한화케미칼의 경우, 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유니드에 매각하면서 과잉공급되고 있는 가성소다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하고 주력사업인 PVC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유니드는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지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잠재수요가 풍부한 가성칼륨 생산량 7만톤을 증가시키고 가성칼륨 생산 부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도 창출함
    - 유시스의 경우, 조선업 불황에 따른 관련 SW 부문 개발사업을 축소하면서 SW 지적재산권 일부를 매각하고 IoT 기술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및 드론 개발 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해 울산 테크노파크에 공장신설 및 하드웨어 제작용 자산을 매입함
    - 아이씨티의 경우, 공급과잉 상황의 기존 범용전선케이블의 생산 감축을 위해 안산공장을 매각하고 특수용 고압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전선 제품을 신규 생산을 위해 춘천공장으로 기존 설비 이전 및 추가 설비투자를 시행함
    - 삼강엠앤티와 사모펀드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후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으면서 고성조선해양 주식 및 사채를 인수 후 경영권을 확보함
    - 동종업종 관계사인 연세의료기와 종로건강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으면서 종로의료기로 합병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기존 의료기기 도소매 사업부문은 축소하고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제조 및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 및 연구소를 신설하고 관련 설비를 매입함
- 「기업활력법」의 전체 성과에서 증권거래세 면제의 세제지원의 효과만을 분리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지만 향후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와 함께 동 호의 유지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 1) 부실금융기관 관련

- 본 조항은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조세지원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신설된 조항임(법률 제5584호, 1998.12.28.)
- 농협중앙회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 보유 현황(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바젤 III 기준) 공시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후순위채권보유금액은 2013년 이후 0원임<sup>91)</sup>
    - 부실금융기관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임
    - 2013년 이전에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후순위채권보유금액은 공시되지 않았으며 신경분리 이후 바젤 III 기준(BIS 8%, 보통주 자본비율 4.5%, 티어1 자본(보통주 자본과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비율 6%) 대비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됨
  - 2013년 이후 본 조항에 의해 농협중앙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기금을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분리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함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의 수행에 사용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본래 존재하던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91) 농협은행(2017)

분리하여 만든 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 수행에 사용됨

- 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5조 2,160억원 → 2014년 3,044억원, 2015년 520억원, 2016년 10.9억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2012년 15조원에 달했던 자금지원 규모는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파산하였고 2010년 말 기준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이 사태로 인한 대규모 M&A로 79개로 축소됨

<표 III-4>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방식에 따른 기금별 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합계 (A+B)
	출자	출연	대출	소계 (A)	출자	출연	자산 매입	소계 (B)	
2003	0	0	0	0	662	6,077	4,609	11,348	11,348
2004	0	0	0	0	19,116	4,597	4,635	28,348	28,348
2005	168	4,246	1,085	5,499	12,653	4,105	12,465	29,223	34,722
2006	168	6,135	1,085	7,388	0	3,928	1,945	5,873	13,261
2007	380	6,602	1,827	8,809	0	532	530	1,062	9,871
2008	177	3,044	470	3,691	0	583	504	1,087	4,778
2009	141	3,314	581	4,036	0	38	1,161	1,199	5,235
2010	345	5,447	928	6,720	0	84	0	84	6,804
2011	972	58,513	567	60,052	0	5	0	5	60,057
2012	1,411	150,120	533	152,064	0	96	0	96	152,160
2013	1,271	17,904	34	19,209	0	0	0	0	19,209
2014	0	3,042	2	3,044	0	0	0	0	3,044
2015	0	520	0	520	0	0	0	0	520
2016	0	0	0	0	0	11	0	11	11

- 주: 1. 출자는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2.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가성 없이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3. 대출은 현금이나 현물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함  
 4. 자산매입은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2016)

- 2016년 12월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회수한 자산의 누계액은 대출채권(원화채권, 외화채권) 5,862억원, 유가증권(상장 및 비상장 주식) 2억원, 실물자산 680억원임<sup>92)</sup>
  -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자산 중 유가증권 2억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규모는 최고 60만원으로 추정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 업무를 2012년 11월 22일까지 종료하고 이후부터는 인수한 부실자산의 정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sup>93)</sup>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부실채권의 보전, 추심의 수입 및 인수정리”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 정리함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음
  - 부실채권 출자전환 또는 직접 취득한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의 부재로 간접적으로 부실채권인수 현황을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대상의 규모 추이를 살펴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총 1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함
    - 부실채권인수 규모가 2012년 5조 6,499억원 → 2016년 1조 8,398억원으로 최근 5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추세임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지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인수 추이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향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92) 예금보험공사(2016)

93)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15)

<표 III-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상별 부실채권인수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중은행	976	1,936	540	130	114
지방은행	1,134	3,489	2,100	2,984	1,378
저축은행	2,226	208	70	14,302	294
공공기관	52,156	24,150	28,580	21,437	15,065
기타	7	552	111	4,318	1,547
합계	56,499	30,335	31,401	43,171	18,398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공시

## 2)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관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권 보유 현황은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에 회의적임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BIS 자기자본(바젤 III 기준) 공시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후순위채권 보유금액은 2013년 이후 0원임<sup>94)</sup>
- 수협중앙회의 경영공시 및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대한 재무제표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증권 보유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2, 제19호의2)
-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공시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증권 보유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3, 제19호의3)

##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 1) 재무구조개선기업 관련

- 본 조항은 2009년 당시 건설, 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약화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94) 농협은행(2017)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설되었고(법률 제9671호, 2009.5.21.,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 강화 및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조정한 바 있음(법률 제12853호, 2015.1.1.,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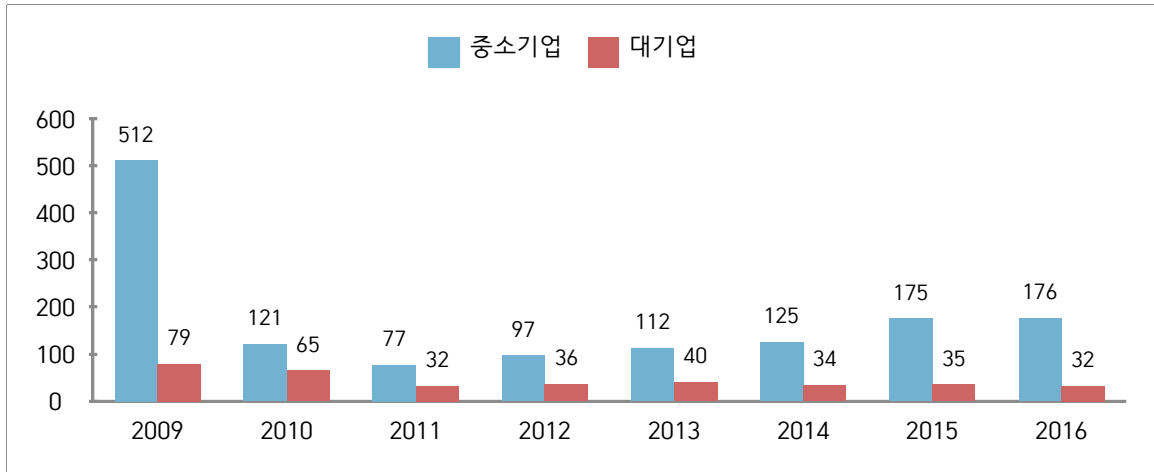
- 직접적인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상에 대한 투자 규모 자료는 파악되지 않음
- 간접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대기업 현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수에 대해 추론함
- 간접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따른 본 조항의 의미를 분석함

□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수는 2009년 급증한 후 2011년 이후부터 30~40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512개 → 2010년 121개로 감소하였고 2012년 97개 → 2016년 176개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수는 2009년 79개 → 2010년 65개로 감소하였고 2013년 40개 → 2016년 32개로 약한 감소세를 보임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재무적 곤경을 겪는 기업의 수가 급증함
  - 2009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가 신설된 것은 이러한 재무적 곤경을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하도록 유도함
  -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추진되는 기업에 속하게 됨
  - 대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구조조정 대상의 수가 안정화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는 중소기업 중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III-3] 연도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추이

(단위: 개)



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부(-),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비록 총자금 조달 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기관 차입과 같은 간접금융이 전체 기업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9%까지 축소되다가 2014년 이후 60%를 상회하며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2008년 최고치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81.6조원 수준으로 집계됨
    - 2008년 230.4조원 → 2015년 111.6조원, 2016년 81.6조원으로 감소 추세임
    - 기업 자금조달 수요의 축소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기업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이 재무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2012년 최소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19.0조원 → 2015년 76.9조원, 2016년 56.1조원으로 추세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68.8%로 크게 높아짐
    -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 간접금융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금리 인상에 의한 자금조달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증가로 인해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외조달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의 전체적인 자금조달 총량은 감소하면서, 외부적 요소인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간접금융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대상이 될 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유지 필요성을 시사함

<표 III-6> 연도별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원, %)

	간접금융		직접금융		국외조달		기타		총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7	98.6	53.5	54.1	29.4	6.4	3.5	25.2	13.7	184.3	100.0
2008	115.0	49.9	66.9	29.0	8.4	3.6	40.0	17.4	230.4	100.0
2009	19.4	12.7	95.4	62.6	6.1	4.0	31.4	20.6	152.3	100.0
2010	23.4	20.0	61.5	52.5	4.3	3.7	27.9	23.8	117.1	100.0
2011	48.1	31.8	63.8	42.2	15.2	10.0	24.2	16.0	151.3	100.0
2012	19.0	13.9	70.2	51.5	14.7	10.8	32.4	23.8	136.3	100.0
2013	36.2	30.2	41.0	34.2	19.2	16.0	23.5	19.6	119.9	100.0
2014	74.8	62.3	12.7	10.6	12.6	10.5	19.9	16.6	120.1	100.0
2015	76.9	68.9	16.1	14.4	1.2	1.1	17.4	15.6	111.6	100.0
2016	56.1	68.8	16.4	20.1	10.2	12.5	-1.1	-1.3	81.6	100.0

주: 1. 비금융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함

2. 간접금융은 금융기관 차입을 의미함

3. 직접금융은 주식 및 출자지분, 기업어음, 회사채, 공공채(해외채권은 제외)를 의미함

4. 기타는 상거래신용, 정부융자 등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보도자료

##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경우

### 1)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 및 교환 관련

□ 본 조항은 2000년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촉진을 위해 주식교환제도 및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신설함(법률 제 6273호, 2000.10.21., 일부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의 추이를 가늠해보고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함

□ 금융지주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 조항의 유지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2009~2010년 동안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활발했으며 2014년까지 금융지주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5개 금융지주회사가 해체 후 현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금융연구원(2013)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의 취약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권한 및 책임 정립의 미흡, 수익성 개선 등의 시너지 효과 미미,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함
  - 산은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씨티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함

<표 III-7> 연도별 금융지주회사 및 관계기업집단 누적 규모 현황

(단위: 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총계
2003	4	24	12	0	40
2004	5	26	12	0	43
2005	3	22	15	0	40
2006	4	29	16	0	49
2007	4	29	15	0	48
2008	5	41	18	0	65
2009	9	60	29	0	101
2010	12	73	53	7	145
2011	13	76	74	5	168
2012	12	81	87	5	185
2013	13	88	97	2	200
2014	15	94	108	8	225
2015	10	73	35	2	110
2016	10	71	41	2	114

주: 1. 2003년은 7월 기준, 2004년은 5월 기준, 2005~2007년은 8월 기준, 2008~2016년은 9월 기준 현황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자료」

- 최근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 여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진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다수 대기업집단이 복잡한 출자구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의 소유구조의 투명화와 금산분리를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금융사의 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 아래에 두도록 함으로써 일반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특정 대기업의 특혜 논란 등으로 인해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2)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양도 관련

- 본 조항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 매각 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항임(법률 제10522호, 2011.3.31., 일부개정)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2012년 설립 이후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정부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을 합의함
  - 농협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 중 5,000억원은 한국산업은행 주식으로, 5,000억원은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음
    - 한국산업은행 주식 5,000억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최대 25억원임(장외 증권거래세율 0.5% 적용)
    - 한국산업은행주식의 현물출자의 경우 산은금융지주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백지화되었고 도로공사 주식의 현물출자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됨
  -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4조원, 2013년 5,000억원의 채권을 발행 후, 정부가 채권 이자를 완전히 보전해주는 기간은 2016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7년 정부

로부터 1,002억원의 이자보전 예산을 받지만 나머지 이자 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농협금융지주가 직접 부담해야 함

- 2017년 6월 기준 원화사채 중 일반사채 금액은 3조 3,100억원이고 이에 대한 연간 이자는 최대 1,241.3억원이고, 후순위사채 금액은 3,000억원이며 이에 대한 연간 이자는 106.2억원임<sup>95)</sup>
- 2018년부터 연간 약 1,400억원의 채권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함

□ 산업은행의 현물출자는 백지화됐으므로 동 조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95) 농협금융지주(2017)

## IV. 효과성 평가





## IV. 효과성 평가

### 1.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 가. 설문개요

-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큰 주제에 연관된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의 평가군으로 묶어서 수행되고 있는 이번 심층평가에 대한 효과성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가늠해보고자 함
  - 이번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지원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간접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의 인식 및 경험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함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 중에서도 동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동 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총 50명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대상 공인회계사 중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42%인 21명이며 나머지의 경우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동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음
    - 동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명의 유경험자 중 3명에 해당하는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V-1> 응답자에 대한 기초자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전체	(50)	94.0	6.0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	(9)	10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7)	10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10)	90.0	10.0
	10년 이상	(24)	91.7	8.3
구조 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85.7	14.3
	없음	(29)	100.0	0.0

- 구조조정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구조조정 수행 시기가 '2014~2016년'인 응답자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응답자 중, 구조조정 수행 시기가 '2014~2016년'인 응답자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 구조조정 업무 수행 시기(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2007년 이전	2008~ 2010년	2011~ 2013년	2014~ 2016년	2017년	
전체	(21)	23.8	19.0	28.6	52.4	23.8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3)	0.0	0.0	0.0	10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4)	0.0	0.0	50.0	50.0	50.0
	10년 이상	(14)	35.7	28.6	28.6	42.9	21.4
구조 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23.8	19.0	28.6	52.4	23.8

- 구조조정 수행 시 증권거래세 면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가 ‘1억 미만’인 응답자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면제규모 자체가 크지 않음을 시사
  - 해당 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71.4%가 ‘1억 미만’의 증권 거래세를 면제받았다고 응답함

〈표 IV-3〉 구조조정 관련 경험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5억 이상
전체		(10)	80.0	10.0	10.0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	100.0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1)	100.0	0.0	0.0
	10년 이상	(7)	71.4	14.3	14.3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10)	80.0	10.0	10.0

## 나. 설문 결과

### 1) 동 제도의 전반적 필요성

-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 필요도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8.0%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 구조조정 수행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5.7%이며, 수행 경험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9.7%로 나타나서 유경험자일수록 소폭이나마 동 제도에 유지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응답
  - 이는 동 제도에 의해 감면받은 규모가 대체로 1억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표 IV-4> 동 제도의 전반적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부정 (1+2)	긍정 (3+4)	
전체	(50)	2.0	10.0	80.0	8.0	12.0	88.0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	(9)	0.0	0.0	100.0	0.0	0.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7)	0.0	28.6	71.4	0.0	28.6	71.4
	5년 이상 10년 미만	(10)	0.0	0.0	90.0	10.0	0.0	100.0
	10년 이상	(24)	4.2	12.5	70.8	12.5	16.7	83.3
구조 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0.0	14.3	71.4	14.3	14.3	85.7
	없음	(29)	3.4	6.9	86.2	3.4	10.3	89.7

## 2) IMF 위기 시 동 제도의 효과성

- 과거 IMF 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자가 68.0%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2.0%로 나타나며 앞서 살펴본 전반적 필요성에 비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회계사 경력이 길고 구조조정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축소됨
  - 해당 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응답자는 모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반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5%로 나타남
  - 구조조정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자는 57.1%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9%로 나타난 반면, 수행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효과적이었다’는 응답한 응답자는 75.9%,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4.1%로 나타남

〈표 IV-5〉 과거 IMF 위기 시 동 제도의 효과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효과적 이지 않았음	효과적 이지 않았음	효과적이 었음	매우 효과적이 었음	부정 (1+2)	긍정 (3+4)
전체	(50)	2.0	30.0	68.0	0.0	32.0	68.0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	(9)	0.0	0.0	100.0	0.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7)	0.0	42.9	57.1	0.0	57.1
	5년 이상 10년 미만	(10)	0.0	40.0	60.0	0.0	60.0
	10년 이상	(24)	4.2	33.3	62.5	0.0	62.5
구조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0.0	42.9	57.1	0.0	57.1
	없음	(29)	3.4	20.7	75.9	0.0	75.9

### 3) 증권거래세 면제규모 대비 효과성

- 연도별 증권거래세 면제규모 대비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4.0%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6.0%로 나타나며 과거 IMF 시의 동 제도의 효과성과 유사한 응답성향을 보이고 경력이 길고 유경험자일수록 전반적 필요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보다는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임
- 해당 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응답자는 모두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반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0%로 나타남
- 구조조정 수행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7.1%로 나타났으며, 수행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9.0%로 나타남

<표 IV-6>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대비 동 제도의 효과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효과적 이지 않았음	효과적 이지 않았음	효과적이 었음	매우 효과적이 었음	부정 (1+2)	긍정 (3+4)
전체	(50)	0.0	36.0	64.0	0.0	36.0	64.0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	(9)	0.0	0.0	100.0	0.0	100.0
	3년 이상 5년 미만	(7)	0.0	42.9	57.1	0.0	57.1
	5년 이상 10년 미만	(10)	0.0	30.0	70.0	0.0	70.0
	10년 이상	(24)	0.0	50.0	50.0	0.0	50.0
구조 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0.0	42.9	57.1	0.0	57.1
	없음	(29)	0.0	31.0	69.0	0.0	69.0

#### 4) 각 목적별 상대적 중요도

- 동 제도의 4개 목적 중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목적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부실우려 상호금융기관 정리 지원’(44.0%)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양도’(38.0%),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지원’(14.0%),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4.0%)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력이 길고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양도’(66.7%)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응답하며 무경험자의 응답과 대조를 이룸

<표 IV-7> 각 목적별 상대적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실금융 기관 및 부실/부실우려 상호금융기관 정리 지원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양도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지원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전체	(50)	44.0	38.0	14.0	4.0	
해당 분야 경력	3년 미만	(9)	88.9	0.0	11.1	0.0
	3년 이상 5년 미만	(7)	57.1	28.6	0.0	14.3
	5년 이상 10년 미만	(10)	30.0	70.0	0.0	0.0
	10년 이상	(24)	29.2	41.7	25.0	4.2
구조 조정 수행 여부	있음	(21)	19.0	66.7	9.5	4.8
	없음	(29)	62.1	17.2	17.2	3.4

가) 일반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 ‘일반법인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주식양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조특법」 ‘제117조1항 제14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제117조 제1항 제2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순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90.0%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교환 및 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증권투자 목적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원이나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낮게 평가됨
- 응답한 세부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8>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제117조1항14호)	(제117조1항24호)	(제117조1항6호)
전체		(19)	73.7	21.1	5.3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	100.0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7)	42.9	42.9	14.3
	10년 이상	(10)	90.0	10.0	0.0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14)	78.6	14.3	7.1
	없음	(5)	60.0	40.0	0.0

<표 IV-9>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일반법인 구조조정 지원의 경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체		(19)	57.9	26.3	15.8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	50.0	5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7)	28.6	28.6	42.9
	10년 이상	(10)	80.0	20.0	0.0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14)	57.1	35.7	7.1
	없음	(5)	60.0	0.0	40.0

나)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부실우려 상호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지분 취득 이후 양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조특법」, ‘제117조1항 제8호&9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해당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66.7%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8호&9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응답한 세부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부실 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0>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제117조1항7호&8 호&9호)	(제117조1항7호, 7호의2&3)	(제117조1항19호의 1&2&3)
전체		(22)	68.2	27.3	4.5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8)	62.5	37.5	0.0
	5년 이상 10년 미만	(4)	50.0	25.0	25.0
	10년 이상	(3)	66.7	33.3	0.0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7)	85.7	14.3	0.0
	없음	(4)	100.0	0.0	0.0

<표 IV-11>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부실금융기관 지원의 경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부실 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출자된 정부 출연기관의 거래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의 빠른 구조조정으로 시스템위험 (systemic risk)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22)	50.0	31.8	18.2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8)	87.5	0.0	12.5
	5년 이상 10년 미만	(4)	50.0	25.0	25.0
	10년 이상	(3)	0.0	100.0	0.0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7)	28.6	42.9	28.6
	없음	(4)	25.0	50.0	25.0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임
- 해당분야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응답자 중 66.7%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3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답한 세부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에’가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2>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을 위한 목적 중 각 호별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제117조1항13호)	(제117조1항23호)
전체		(7)	57.1	42.9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1)	0.0	100.0
	10년 이상	(6)	66.7	33.3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2)	50.0	50.0
	없음	(5)	60.0	40.0

<표 IV-13> 각 호별 중요도에 대한 이유: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의 경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7)	85.7	14.3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1)	100.0	0.0
	10년 이상	(6)	83.3	16.7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2)	50.0	50.0
	없음	(5)	100.0	0.0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모두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목적이 여타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2명 응답자 모두 해당 세부 조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양도관련 지원제도의 중요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음

### 5) 각 호별 지원제도의 역할 및 유지 필요성

- 각 호별 지원제도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70% 이상)이 동 제도는 구조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으로 인해 중요하다고 응답
  - 각 호별로 응답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동 제도의 각 호별 지원제도를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일 뿐 구조조정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응답
  - 그러나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구조조정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동 제도가 작동한다는 응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구조조정 실행여부 결정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응답률은 아래의 응답률을 100에서 차감한 것임

<표 IV-14> '각 호별 지원제도가 재무적 보조금 성격' 이라는 응답률

(단위: %)

구분		일반 법인 구조조정 지원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재무구조 개선계획 지원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6호	14호	24호	7호, 7호의2, 7호의3	8호, 9호	19호 19호의2 19호의3	13호	23호	16호	22호
전체		83.3	85.7	75.0	73.5	76.5	84.8	72.7	70.6	78.6	79.2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100.0	100.0	100.0	85.7	85.7	85.7	75.0	87.5	80.0	66.7
	3년 이상 5년 미만	100.0	100.0	75.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71.4	62.5	50.0	62.5	62.5	75.0	62.5	42.9	71.4	71.4
	10년 이상	80.0	88.2	80.0	66.7	73.3	85.7	68.8	71.4	76.9	81.8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70.0	80.0	76.9	54.5	63.6	70.0	66.7	75.0	63.6	66.7
	없음	92.9	90.0	73.7	82.6	82.6	91.3	77.8	68.2	88.2	86.7

- 각 호별 지원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22호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 관련 지원제도의 유지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여타 목적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 관련 지원제도의 유지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2% 수준임
  -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 및 교환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유지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60%에 불과함
- 이외에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56%에 불과함
- 향후 유지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인 82%를 보인 호는 제14호로서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과 적격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일반법인 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지원제도임
- 이외의 여타 호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72~78%로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IV-15〉 각 호별 지원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

(단위: %)

구분	일반 법인 구조조정 지원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재무구조 개선계획 지원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6호	14호	24호	7호, 7호의2, 7호의3	8호, 9호	19호 19호의2 19호의3	13호	23호	16호	22호	
전체	56.0	82.0	76.0	76.0	78.0	74.0	72.0	74.0	60.0	52.0	
해당분야 경력	3년 미만	66.7	66.7	66.7	100.0	100.0	88.9	44.4	88.9	66.7	44.4
	3년 이상 5년 미만	28.6	57.1	57.1	57.1	57.1	57.1	57.1	57.1	57.1	42.9
	5년 이상 10년 미만	60.0	100.0	90.0	70.0	70.0	70.0	90.0	80.0	50.0	50.0
	10년 이상	58.3	87.5	79.2	75.0	79.2	75.0	79.2	70.8	62.5	58.3
구조조정 수행여부	있음	57.1	85.7	76.2	61.9	66.7	61.9	76.2	61.9	57.1	52.4
	없음	55.2	79.3	75.9	86.2	86.2	82.8	69.0	82.8	62.1	51.7

## 2. 심층면접을 통한 평가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지원효과가 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앞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와 함께 보완적으로 각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함
- 아래와 같은 전문가들이 본 제도의 각 조항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수렴함

<표 IV-16> 심층면접 대상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관련 조항
예금보험공사	차장	제1항 제8호 제1항 제7호 제1항 제7호의 2 제1항 제7호의 3 제1항 제19호
회계법인	상무	제1항 제14호 제1항 제16호
법무법인	회계사	제1항 제14호 제1항 제16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항 제6호
대학교(세무회계학과)	교수	제1항 제16호

### 가. 일반 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 일반법인의 구조조정 중 신설법인 설립과 합병 및 분할은 사업의 재편 및 지분 재편을 동반하고 자산 및 주식의 이동과 양도가 발생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거래세 등의 세금은 중요한 고려대상임
- 회계법인의 경우 세무 검토 시, 적격 요건에 해당되어 기업의 세금 면제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또는 합병 및 분할을 진행하므로 본 조항과 같은 세제지원은 신설법인 설립과 합병 및 분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

-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가 커지겠지만, 주식 보유 비중이 낮고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의 업종의 기업은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음
    - 신설법인 설립과 합병 및 분할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세제지원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추진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일례로, 2001년 3월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이 공동출자하여 택배기업 “CVSnet”을 설립하였으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세제지원이 없음에도 2016년 12월 “CVSnet”은 인적분할되어 CU는 “BFG포스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함
  -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이연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 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면제는 타당성을 가짐
- 
-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신설 법인 설립 및 적격 합병, 분할에 대한 세제혜택인 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항은 의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기존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독려하여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권투자 목적의 외국법인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실효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내 증권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외국인 증권 투자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유지 필요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기업활력법」의 취지는 산업계에서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아직 대상 기업의 수가 적어서 「기업활력법」의 시행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기업활력법」의 세제지원에 해당하는 기업간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 중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작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됨
  - 염유경·황금희·박성호(2016)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관리 측면에서의 사후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법적 요건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의 경우 정책대상자를 명확하게 선별하기가 어려워 본래의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글로벌 시장에서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어느 기간이 과잉공급 기간인지 어느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지 모호하게 되어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 단독의 세제지원이 아닌 실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더불어 지원되는 경우, 보조적인 세제지원으로써 정책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됨
- 국내 기업의 현황과 한계기업의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혜택인 본 조항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기업활력법」의 경우 3년 한시법으로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활력법의 성과에 따라 재제정의 필요성을 분석 후, 기업활력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나. 부실금융기관,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수협·산림조합 지원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청산이라는 공적활동에 대한 특수성에 의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받고 있어서 예금보험공사는 증권거래세 면제조항뿐만 아니라, 여타 특례조항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분 인수 대상자와 접촉 시 특례조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단기간에 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금융업 심사가 엄격하여 금융업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금융업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기업 인수 후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금융회사의 경우, 주식 등의 증권 비율이 타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양도세 과세이연 조항의 세제지원은 규모가 크고 당장 발생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의 세제지원은 규모가 작고 취득된 주권 또는 지분을 당장 양도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므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
  - 순자산 부족분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자금 지원 규모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임
  -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자에게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함
  - 부실농협과 관련되어 있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김영균·최홍은(201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농협은 비영리를 표방하는 특수법인 협동조합이면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농협협동조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동시 적용을 받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영리집단으로 구분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의 세제지원이 특정 영리집단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어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서 부실금융회사(부실조합)와 부실우려금융회사(부실우려조합)를 동시에 정책대상자로 정의한 것은 부실화된 회사나 조합에 대한 사후 처리를 수행하고 예금보험위원회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조합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가짐
  -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위기 기간에는 부실금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의 영향이 커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최근 본 조항이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상시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회의적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자금지원 및 채권인수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임
  -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현재 적용받는 부분이 미미함
  - 부실금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과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이 적용 가능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시점이 유사할 것으로 보임
    - 심층면접의 의견대로 본 조항이 항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조항의 적용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부실농협, 부실수협, 부실산림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와 제117조 제1항 제19호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따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음
-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해서 여타 부실 금융기관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나 조합원의 이익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과연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다른 조항의 은행, 금융기관 등의 정의를 이용하고 부실 수협, 부실 산림조합, 부실 농협에 대한 조항을 통합하여 본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는 규정의 형식적 논리라는 판단임
    - 특히 협동조합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비영리성은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영리법인과 목적과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의견임
- 본 조항의 적용 대상 중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농협중앙회의 경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면제 규모 파악 및 정책 대상자의 추세에 대한 추론을 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효과성의 평가는 수행되기 어려움
  -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에 비해 재무 규모가 작아 재무 규모 대비 본 조항에 대한 유사한 적용 비율을 가진다면, 본 조항의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적용 규모는 미미하고 다른 조항에 통합될 여지가 보이므로 조항의 삭제 또는 통합 등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12월 기준 농협중앙회는 자산 121조원, 부채 105조원, 자본 16조원의 재무구조를 가짐
- 2016년 12월 기준 수협중앙회는 자산 11.4조원, 부채 11조원, 자본 0.4조원의 재무구조를 가짐
- 2016년 12월 기준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산 2.63조원, 부채 2.56조원, 자본 0.07조원의 재무구조를 가짐
-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협동조합과 같이 두 중앙회를 포함할 수 있는 조직체에 대하여 정의한 후, 일괄적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조항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심층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임

####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지원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회계법인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위기 등 특수한 사건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적용 규모와는 별개로 정책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임
- 본 조항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책 대상자도 구체적이며,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요구되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라.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 최근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회계법인의 경우 최근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면제 단독의 효과로는 금융지주회사 중 주식의 교환이나 거래가 많이 필요한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의 촉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축소되며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하고 은행으로 돌아가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씨티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와 은행을 합병 후 은행을 존속시키고 지주회사를 소멸시킴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 후,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소멸되고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됨
  -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함
  - KNB금융지주의 경우, 경남은행에 합병되어 소멸함
  - KJB금융지주의 경우, 광주은행에 합병되어 소멸함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할 때, 본 조항에 의한 세제지원의 규모는 상당했음
  - 2009년 KB금융지주 설립 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에 의해 1,200억원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됨
    - 과거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설립 당시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적용되었음
    - 당시, 금융지주회사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본 조항의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을 2007년 말에서 2009년 말로 2년 연장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함
    -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없었다면, 2008년 말 국민은행 주가인 69,000원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주들이 주식 양도가액의 0.5%인 1,20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함
      - 이 경우 국민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주사 전환에 반대한 개연성이 있었음
  
-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 조항에 의한 세제지원의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전문가 그룹 심층면접에서 제기됐으나, 연구진의 의견으로는 향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판단됨
  - 본 조항의 문제보다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 감소가 원인임
    -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이 부각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미미한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현 상태로는 본 조항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 조항의 문제이기 보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선호도의 문제임
- 추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등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활발해지지 않는다면 본 조항은 폐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일반지주사 아래 금융지주사를 별도로 두고 그 아래 금융계열사들을 두는 제도로서 일반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여타 관련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농협금융지주 설립 당시에는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본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으며 과거 설립 당시의 출자와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특혜였으므로 본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함
  - 농협의 신경분리와 동시 합의되었던 한국산업은행 주식 5,000억원의 출자 이행 가능성이 낮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유지할 필요가 없음
  -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에 대하여 추가적인 출자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에 따라 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 추가적인 현물출자 계획이 없다면, 본 조항은 효용성을 상실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3. 시사점

- 동 심층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각 지원대상과 제도 활용실적 등의 직접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간접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부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는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전문가 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음
- 동 제도의 필요성, 목적별 상대적 중요도, 각 호별 지원제도의 역할 및 유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

거래세 면제는 구조조정 실행을 촉진하기보다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제도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회계사들의 응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8%가 필요함(80%) 또는 매우 필요함(8%)으로 응답
  - 유경험자의 경우 71.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4.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자의 경우 8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 동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원(44%),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38%),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지원(14%),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4%)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
  - 구조조정 유경험 회계사의 경우 57.1%가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 회계사의 경우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원(62.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각 호별 지원제도가 해당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으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호별 유지 필요성 문항에서 대부분 52% 이상의 응답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인 제도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제22호)임

□ 전문가 그룹 심층면접을 통해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며 상징성이 있으므로 일부 정책대상을 제외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정확히 정량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동 제도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가용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수행되지 못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일수록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중요성은 커질 수 있음

- 일반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촉진,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정책목적 하나하나는 도입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일부 정책대상자는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당시 정부의 지원계획의 일환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계획은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2호의 삭제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제16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선호도 하락으로 인해 폐지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화 여부를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여 여타 금융기관 관련 조항과 분리하여 규정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전문가 그룹 심층면접 과정에서 제기됐으나, 연구진의 의견으로는 동 조합들이 법률적 근거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행태적으로는 영리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판단됨
  - 협동조합의 기본 목적은 조합원의 이익 증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일반 영리법인과 조직의 속성이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굳이 현행 규정을 형식적 논리에 입각하여 일반 금융기관과 여타 조합 관련 규정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임
  - 물론 관련 규정의 깔끔한 정비는 납세자의 관련 규정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의 저감 차원에서 시도될 수도 있겠으나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V. 제도 개선방안





## V. 제도 개선방안

### 1. 종합평가

- (연구목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 파악 결과와 함께 세무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감면규모 파악) 2007년 이후 「조특법」 제117조 제1항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가 조세지출예산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호별 감면규모를 파악
  - (타당성) 법리적 검토 및 우리 경제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효과성) 다양한 정책대상자들의 정량적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
  - (제도개선) 현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정책대상자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부 호의 개선방향을 제시
  
- (각 호별 감면규모) 2012년 이후 감면규모의 94.62%가 제14호 「법인세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 적격 합병 및 분할, 「조특법」상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포괄적 주식의 교환·이전 관련에 의해 유발됐으며, 일반대기업·수입금액 1조 원 이상·금융보험업 중심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감면규모와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했으나 2014년 이후 최근의 감면규모 차이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당시 증권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외부 대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정책타당성) 기업의 유지 및 계속성을 위해서 현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구조조정을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과세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구조조정 후 기업 내에 존속하는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구조조정 지원제도와 함께 증권거래세의 유지 필요성이 인정됨
  - 다양한 정책대상자 중 입법시기와 다른 여건의 변화로 인해 폐지를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음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에 대한 유지 필요성은 현저히 낮아지거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 제16호와 제22호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
      - 기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해체가 관찰되며 이는 동 지원제도의 문제이기 보다는 경제주체들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에 기인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가능성은 없음
    - 그러나 「중간지주회사법」의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제16호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제도는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프랑스가 2012년 증권거래세를 재도입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효과성)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심층면접을 통해 동 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한 결과, 동 제도의 효과성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호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동 제도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회계사들의 응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88%가 필요함(80%) 또는 매우 필요함(8%)으로 응답
  - 동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4%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각 호별 지원제도가 해당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재무적 보조금의 성격으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실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원(44%), 일반법인 구조조정 촉진(38%),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지원(14%),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4%)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
- 심층면접 결과,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연구진의 판단은 유보적임
- 부실 또는 부실우려 농협, 수협, 산림조합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여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개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지적됨
-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일반 영리법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들을 형식적으로 재분류하고 조항을 달리하는 것의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므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대안으로 판단됨

##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 전반적으로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일부 세부 호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
  -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중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원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
  - 일반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를 비롯하여 여타 항목들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법과정의 어려움과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를 하나의 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 동 조항의 각 호별 조세지출 규모를 매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부속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각 호별 수혜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축되어야 향후 심층평가에서 각 호별 효과성 분석을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호별 정책대상자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조세지출 규모를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유념하여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속서류에 대한 국세청의 직접적인 관리 강화노력이 필요하고 전산화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

## 참 고 문 헌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15년 공적자금백서』, 금융위원회, 2015.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 자료」, 각 연도.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구조조정 대상 기업 발표」.
-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_\_\_\_\_,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영균·최홍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논고』, 44, 2013, pp. 239~270.
- 김종봉·윤태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13권 2호), 2012.
- 농협금융지주, 『2017년 반기보고서』, 공시자료, 2017.
- 농협은행, 『2017년 2분기 경영공시』, 공시자료, 2017.
- 대한민국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박용린, 『기업 구조조정과 PEF 시장의 성장』, 심포지엄 자료, 한국증권학회, 2015.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각 연도.
- \_\_\_\_\_, 「수출입실적」, 각 연도.
- 성승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9.
- \_\_\_\_\_, 「기업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선연구 -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5권 1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3.6.
- 염유경·황금희·박성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사점』, 『이슈&진단』, 226, 2016, pp. 1~25.
- 예금보험공사, 『2016년 연차보고서』, 2016.
- 윤건영, 「자본소득세 정책의 투자유인효과 분석」, 『재정논집』(2호), 1988.
- 이영한,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조세연구』(13권 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12.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이철송, 『회사법강의』(24판), 박영사, 2016.

“SEC Fee”—Section 31 Transaction Fees, SEC(Aug. 15, 2007).

정래용·최현섭, 「기업구조조정 세법의 개선 방안 연구」, 『홍익법학』(17권 4호), 2016.

정지선·최천규·권오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28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11.9.

최현경, 박진,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정책자료, 산업연구원, 2016.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합병 및 분할 공시 현황」, 보도자료, 2017.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연구보고서, 2016.

\_\_\_\_\_,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_\_\_\_\_, 『자금순환동향』, 각 연도.

한만수,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 세경사, 1999.

Bijlsma, M., Zwart, G.T.J., “The changing landscape of financial market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rk. Pap., 2013  
 (<http://bruegel.org/2013/03/the-changing-landscape-of-financial-markets-in-europe-the-united-states-and-japan/>).

Christopher L. Culp, “Financial Transaction Taxes: Benefits and Cost,” 2010  
 (<http://ssrn.com/abstract=1572962>).

Clark, Robert C., “Corporation Law, Little, Brown and Compamny(Boston),” 1986.

Dale Brown,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ll Hurt Advisors and Clients,” Oct. 4, 2012  
 (<http://www.advisorone.com/2012/10/04/a-securities-transaction-tax-will-hurt-advisors-an>).

Dean Baker, Robert Pollin, Travis McArthur, and Matt Sherman, “The Potential Revenue from Financial Transactions Taxes,”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09(<http://cepr.net/documents/publications/ftt-revenue-2009-12.pdf>).

Eric M. Schmitterer, “Evidence in Opposition to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The Case of Japan,” George W. Bush Institute, 2012  
 ([http://gwbcenter.imgix.net/Resources/Evidence\\_in\\_Opposition\\_to\\_Securities\\_Transaction\\_Taxes\\_The\\_Case\\_of\\_Japan.pdf](http://gwbcenter.imgix.net/Resources/Evidence_in_Opposition_to_Securities_Transaction_Taxes_The_Case_of_Japan.pdf)).

- Filip Šramko, “The Impact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Quality: Evidence from France and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Sciences*, Vol. IV, No. 3, 2015.
- Frank Holmes, “Risk Of Going Hungary With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orbes*, 2012.7.29.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2/09/27/risk-of-going-hungary-with-a-financialtransaction-tax/>).
- Goldberg, Michelle, et al. “VII.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Should the Legislature Act as Robin Hood?,” *Rev. Banking & Fin. L.*, 2013, 32: 297~565(<https://www.bu.edu/rbfl/files/2013/10/Goldberg.pdf>).
- Hiroyuki Ono and Minoru Hayashida, “A Turnover Tax, Transactions Costs and Stock Trading Volume: The Case of Japa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05.
- Karl Habermeier and Andrei A. Kirilenko,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d Financial Markets,” *IMF Staff Papers*, vol. 50, 2003.
- Mark P. Keightley, “Financial Transactions Taxes: In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078, Oct. 22, 2015(<https://fas.org/sgp/crs/misc/R42078.pdf>).
- Matheson, T., "Security transaction taxes: issues and evidenc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9, Issue 6, 2012.
- Peter Gomber, Martin Haferkorn and Kai Zimmermann,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France: Impact on Market Quality and Inter-Market Price Coordination,” White Paper Series No. 11, Center of Excellence SAFE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Finance in Europe, 2014.
- Scholes, M. and M. Wolfson,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63, pp. 141~164, 1990.
- Schwert, W., and Seguin, P. J.,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Financial Analysts Journal*, Vol. 49, 1993.
- Stiglitz, J. E., “Using tax policy to curb speculative short-term trading,”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3, 1989.
- Summers, L. H., and Summers, V. P., “When financial markets work too well: A cautious case for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3, 1989.
- Swenson, D. L.,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1994, pp. 243~266.

Thornton Matheson, “Taxing Financial Transactions: Issues and Evidence,” IMF Working Papers, 2011(<http://ssrn.com/abstract=1784582>).

Tobin, James,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1978.

<웹사이트>

삼일아이 <http://www.samili.com>.

French Government, ‘French Tax Law’, <http://www.legifrance.gouv.fr/>, January 14, 2013.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tax/250117-changes-french-fft-2017-finance-act-measures>  
Thomson-Reuters DB.